

CPR

프라이버시

전자주민카드 관련 글

전자주민카드 관련 글

1. 정보사회의 인권문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즈음하여, 천주교인권위원회 심포지엄
2. '인구'관리의 권력관계, 정송일(정보통신연대INP 회원)
3. 통합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변호사협회
4. 정보지배사회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그 위험성; 김기중 변호사
5.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김기중 변호사
6. 제 8차 맥브라이드 라운드 테이블 특별세션;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인권 자료실			
98	5/12	B4-1	/

천주교 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정보사회의 인권 문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즈음하여

일시 : 1997년 6월 30일(월) 오후 7시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서울 명동)

천주교 인권위원회 (CATHOLIC HUMANRIGHTS COMMITTEE)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3층 전화 : (02)777-0643 모사전송 : (02)775-6267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심포지엄

정보사회의 인권 문제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에 즈음하여

일시 : 1997년 6월 30일(월) 오후 7시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서울 명동)

발제1. : 정보사회의 인간 문제 - 가톨릭 사회론의 입장에서

박문수(우리신학연구소 연구원, 서강대 종교학과 박사과정)

발제2. : 주민카드의 올바른 이해

김돈기(내무부 주민과 과장)

발제3. :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성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김기중(변호사, 민변 회원)

토론 : 강경근 교수(충실대 헌법학), 김녕 교수(본회 회원, 서강대 정치학),

박태식 교수(서강대 신약성서학), 장영환 사무관(내무부, 전자주민증기획단)

사회 : 이대훈(본회 회원, 참여연대 사무국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발제1

정보사회의 인간 문제

박문수(우리신학연구소 연구위원)

나는 가톨릭 사회론의 접근방식에 따라 1) 관찰 --> 2) 신학적 성찰 --> 3) 사목실천의 순서로 정보사회의 인간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주민카드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심포지엄이기에 주로 인권문제의 시각에서 인간 문제에 접근하겠다.

I. 관찰

불과 몇 년전만 해도 단지 예상에 불과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보던 미래가 가능한 현실로 드러날 것처럼 보인다. 물론 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로 과학기술의 진보를 예로 든다. 그동안 눈부시게 발전해 온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다른 영역의 첨단 기술들을 목격한 바 있는 우리로서는 이 기술들이 인류의 번영과 진보를 이루어 줄 유용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우리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듯 각국의 초국적 기업들은 마치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전을 해댄다. 이것은 '손끝 하나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세상' 어느 대기업의 광고문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만 된다면 낙관적인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분좋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정보통신기술과 과학의 여러 영역의 배후에 있는 복잡한 논리들을 볼 때 낙관적인 미래는 상당 기간 유보해야 할 정도로 불투명하며 우리의 참여가 없으면 참담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사회라는 '신화'

먼저 우리가 꿈꾸고 있는 정보사회가 어째서 '신화(myth)'인가? 르랑 바르트(R.BARTHES)는 외연, 내포를 거쳐 3차적 의미화하는 과정을 신화라고 불렀다. 그가 말하는 신화는 고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믿음이나 가치, 태도 등을 가리킨다. 그 가운데서도 문화연구가들이 말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다른 표현이

다.) 나의 논지는 우리가 듣고 있는 '정보사회론'이 이런 신화라는 것인데, 이 논의의 배경에는 현존 지배질서와 경제체제의 재생산의 의도가 담겨 있으며, 그람시(Gramsci)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지배자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통하여 헤게모니(hegemony)를 관철시키려는 뚜렷한 목적이 들어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²⁾

신화의 내용을 보자. 먼저, 우리가 가장 빠르게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 컴퓨터와 통신기기, 또 이 둘이 결합된 컴퓨터케이션(comunication)³⁾의 기술적 결과물들이다. 집에서 은행일을 보고, 물건을 사는 일도 컴퓨터를 통해 카탈로그를 보고 주문을 하니 시장에 갈 필요도 없으며, 전세계의 재미있는 오락물들을 쌍 가격으로 방안에 가만히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인터넷 폰으로 외국에 나가있는 친구와 식구들에게 공중전화 요금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공장은 자동화되어 품질은 좋으면서도 값은 더욱 저렴해지니 금상첨화이고, 아침저녁마다 출퇴근하느라 교통지옥을 겪지 않고도 집에서 아니면 전원주택이나 휴양지에서 개인 컴퓨터 단말기(PDA)를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주민증록, 운전면허증, 각종 자격증, 버스카드, 공중전화카드, 지하철 패스, 예금통장 등을 따로따로 가질 필요없이 컴퓨터 칩이 들어있는 스마트 카드(smart card)⁴⁾한 장이면 만사 다 해결이고, 잃어버리면 쉽게 다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여 공부하면 하루아침에 세상이 모두 부러워할 빌 게이츠(Bill Gates)와 같은 정보재벌이 될 수도 있는 세상이다. 유전자 지도계획(Human Genome Project)만 성공하면 불치의 병에 걸릴 필요도 없이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고, 중수소를 이용한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방사능이 전혀 없는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며, 도처에 널려 있는 무공해 에너지 기술로 인류는 사상 유례없이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 기분좋은 상상을 하게 해줄 소재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라고는 비싼 물건값과 세금을 내는 일밖에 없는데도, 이러한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인 양 열광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낙관적인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과학기술 결정론에서 비롯한다고 본다.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한가지 원인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결정론(determinism)이 퇴조하는 우리 시대에 유독 이 입장만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과연 과학기술 결정론은 문제가 없는가? 결정론자들은 우리는 우연히, 또는 과

1) R. Barthes, *Mythologies*, London: Paladin, 1973.

2) A. Gramsci, *Selections from Cultural Writings*, in D. Forgacs & G. Noelle-Smith(ed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71.

3) computer와 communication의 합성어로, 일부 나라에서는 정보사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컴퓨터에 통신이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기술상의 혁신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 전반을 가리킨다.

4) 전자주민카드가 앞으로 발전할 형태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알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그의 책 <<권력이동 Power Shift>>에서 이 카드의 위력을 잘 설명해 놓았다.

학자와 기술자의 순수한 탐구노력의 결과로 이전에 가지지 못하였던 과학과 기술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를 통하여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의 발명과 발견의 배후에서 이 발명과 발견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보면 이들의 입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드러난다. 레이몬드 윌리암스(Raymond Williams)는 40년전에 벌써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러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보에 대하여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 바 있다. 윌리암스는 기술이 먼저 우연히 발견되거나 발명되어 사회가 이 기술에 따라 변해 온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 때문에 그 기술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배자들의 욕구에 따라 기술이 발명되었다는 것이다.⁵⁾ 물론 발명에 우연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지배자들의 의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런 현상은 비단 커뮤니케이션 영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세계 유수의 핵물리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소들은 특히 미국의 경우 연구비를 국방성으로부터 받고 있고, 상당부분의 신기술들은 굴지의 대기업이나 초국적 기업들에게서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술은 초국적 기업의 연구소들에서 나온다. 그러나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람들, 집단 또는 기업의 이해관계에 얹매이지 않고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기적에 가까울 만큼 희박한 셈이다. 이렇게 개발된 기술과 발명품은 반드시 상업적인 동기나, 다른 나라와 지역에 대하여 정치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⁶⁾

이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정보사회의 태동 배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의 초강대국 지위를 누려 온 미국은 70년대 이후 자신이 지원한 유럽과 일본의 추격을 받아 여러 영역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경쟁력 상실은 고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해 온 미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결국은 미국의 세계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축적의 위기를 초래하여 이를 반전시킬 계기를 자극하였다. 그래서 항공우주산업과 컴퓨터 기술, 우주산업의 결과로 나타난 통신기술, 냉전시기 군비경쟁을 하면서 얻게 된 군사기술들과 같이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독점적 우위를 점하는 기술들이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미국은 재정적자, 미국호라는 거대한 배의 침몰 등의 역정보(逆情報)를 흘려 경쟁국들의 경계심을 늦추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상황을 역전시킬 작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⁷⁾ 오늘날 정보사회는 이 결과의 반영이며, 결국 정보

5) Raymond Williams, *Communications*, Harmondsworth, Penguin, 1966./*The Problems in Materialism and Culture*, Schocken, N.Y. 1981./<<텔레비전론>>, 박효숙 역, 현대미학사, 1996. 참조.

6)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부터 올해초까지 20여회에 걸쳐 미국 굴지의 초국적 기업들을 소개한 바 있는데, 이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구비를 쓰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사회는 미국이 절대우위를 쥐고 있는 바로 기술들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주도로 생산기술의 혁신과 컴퓨터케이션이 생활의 전영역에 확장적용되면서 후발국들은 기술적 정명(Technical Imperative)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앞선 기술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기술선진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⁸⁾ 그러나 보니 결국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선전하는 것처럼 산업화 과정에서 뒤진 나라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선진국을 앞지를 수도 있다는 예언은 부분적인 진리일 뿐 대다수 후발 도상국들에게는 꿈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게 되었다. 이전에 기술선진국들이 후진국들에게 선진정보와 기술들을 이전해 준 실적이 많았고,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흔적이 뚜렷하였다만 이런 걱정은 그저 기우에 불과한 것이었을 터이다. 그러나 기술과 정보의 국제간 이전은 거의 없거나 있다 하여도 선진국의 기술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⁹⁾ 이러한 과거의 추세와 연결되어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이긴 자(국가, 집단, 개인)가 패한 자들의 것도 다 가질 수 있는 승자독점시장이 되었다. '이긴 자가 다 가지는 사회'가 되어 온 것인바 이러한 양상은 우리가 꿈꿔 온 미래와 정반대의 길을 가는 셈이다.¹⁰⁾ 그러므로 정보사회론은 이러한 현실을 가리는 신화이다.

신화의 세번째 허상은 현실로도 증명되고 있는 기술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격차들이다. 앞으로는 정보가 중심적인 부의 창출수단이 될 것이니 이 영역에만 한정해서 살펴보자. 1) 전세계 컴퓨터의 95%가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¹¹⁾ 2) 전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보는 신문의 양은 전세계 총량의 35%에 불과하다. 3) 전세계 인구의 약 35%가 심각하게 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4) 전세계적으로 미국이 광고에 사용하는 돈보다 더 많은 GNP를 가진 나라는 17개국에 불과하다. 5) 미국에는 전세계 인구의 15%만이 살고 있지만, 전세계 정치제도위성의 궤도를 절반 이상 이용하고 있다. 6) 전세계 인구의 20%만이 살고 있는 10개의 선진국에서 전세계 전화선의 약 4분의 3을 사용하고 있다.¹²⁾ 이외에도 정보의 격차 사례는 무궁무진

7) Stephen Gill, *American Hegemony : Its Limits and Prospects in the Reagan Era*, (Millenium :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5:3(1986), 311-38.

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뉴미디어와 초정보사회>>, 도서출판 오름, 1994. 제5장 참조.

9) 1) 김지운 편저, <<국제정보유통과 문화지배>>, 나남출판, 1991년은 정보유통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격차를 설명하고 있고, 2) 권원기, <<국제기술이전론>>, 나남, 1991은 다른 기술의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격차에 대하여 상세한 예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10) Robert H. Frank & Philip J. Cook, *The Winner Take All Society*, Free Press, New York, 1995. 참조. 이 책이 지난해에 <<이긴 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라는 제목으로 CM 비즈니스 사에서 나왔다.

11) Worldwatch Institute, <<1994 지구환경보고서>>, 도서출판 파님, 1994 195-198쪽.

12) 이러한 사례들에 대하여 넓은 정보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추세대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루돌프 슈트람, <<왜 그다지도 가난한가>>, 김종민 역, 분

하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더 벌어진다는 데 있고, 정보사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유례없는 차별사회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부를 생산하게 될 정보수단의 독점은 지구상의 70%에 해당하는 인구에게 고통스러운 미래를 부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경제적 분배와 인권이다.

II. 신학적 성찰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추세를 살펴보았을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현상들도 나타나지만 유형상으로는 과거와 연장선상에 있는 현상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필자가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이다. 반드시 비관만 할일은 아니겠으나, 신학적으로 보면 종말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선진국이 기존의 지배적 지위를 버리고 후진국의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면서 인류의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현상은 극히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 경제적 남(南)쪽 국가들에게 미래는 고통의 연속일 뿐이다.

나는 정보사회가 오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진전되는 과정도 필연적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회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체제라고 하는데 대하여 반대할 뿐이다. 미래사회의 성격을 이렇게 예상한다면 산업사회에 커다란 사회변화의 동력이었던 노동과 자본의 갈등은 규모와 범위는 다르더라도 정보생산수단과 정보의 소유여하에 따라 빈부의 계층적 격차라는 형태로, 달리는 빈곤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관찰의 논지는 인간문제의 바탕을 이루는 부분이 대다수 인류가 생존수단으로 삼고 있는 경제문제가 되리라는 것 이었다. 권력(Power), 권위(Prestige)도 중요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과 권력, 권위는 하나로 결합되는 경향이 강하였고, 권위는 아니라도 재산과 권력은 쉽게 결합되는 현상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부의 세습과 함께 빈곤이 세습되는 현상도 자주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부와 빈곤의 세습, 권력과 재산의 창출기회 세습은 미래에도 인간의 복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먼저 정보의 불평등이 이전 시대의 부의 창출구조와 같다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토플러는 미국에서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예로 든다.¹³⁾ 그는 미국의 중산층 자녀들과 빈민지역의 유색인종들 사이에는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골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중산층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비싼 게임기에 최신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 이 아이들이 이른바 사이버 평크족인데, 이들은 유색인

도출판사, 1987.이 있다.

13) Alvin Toffler, 앞의 책 참조.

종의 아이들에 비하여 정보사회의 여러 작동기제에 적응할 확률이 수십배가 높다. 교육비가 많이 드는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그나마 격차는 더욱 벌어져 빈민층의 유색인종 아이들은 이미 여러 면에서 추월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유일하게 차별을 받지 않는 군대, 스포츠, 연예계로 진출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스포츠와 연예계에서 성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스포츠계를 흑인들이 주름잡는 것을 보고 이들의 체질이 선천적으로 백인들보다 우수하다는 말을 한다. 그러나 몇몇 조사에 따르면 흑인선수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백인선수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피나는 훈련의 결과였던 것이다.¹⁴⁾ 그나마 이런 곳은 양반이다. 군대가 유일한 출구인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은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을 확률이 높다. 흑인의 비율이 유독 높은 미국군대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인종간의 평등이라는 허울 아래 유색인종 특히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¹⁵⁾ 이 부류에 들지 않는 청소년들은 범죄와 마약의 덫에 빠져든다. 이렇게 정보와 정보수단의 격차는 한 인간의 목숨과 존엄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현대 세계가 공간적 시간적으로 응축되어 가는 현상을 지구화(globalization)라고 한다.¹⁶⁾ 이와 함께 전지구적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어 가는 현상과 동시에 해체와 이질화가 진행되는 것도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구화가 전지구적인 현상이라고 한다면 동북아, 북미, 유럽과 같이 지역적으로 동시에 전개되는 현상은 지역화(Regionalization)이다. 이것은 또한 한국과 집단내에서도 전개되는데 이른바 지방화(Localization)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양상은 한가지 면에서 속성상 일치하고 있다. 모두가 불평등의 구조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세계적인 수준에서 중심부와 주변부, 반주변부로, 지역적이고 지방적인 수준에서도 중심과 주변, 반주변으로 구획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제와 앞으로의 세계가 다른 점이라면 반주변부는 작아지고 점점 중심과 주변으로 원심적인 이원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중심부는 소수로 주변부는 다수로 분열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와 빈곤구조는 영속화된다.¹⁷⁾ 이렇게 보면 지구인구의 70% 이상이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생각하는 가톨릭 교회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두 번째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이다. 부와 권력, 권위에서 소외

14) Mark Naison, *Sports and the American Empire*(Radical America, 1972.7-8) : 로버트 프랭크/필립 쿡, 앞의 책 참조.

15) 잭 웰슨 폴마이어, <<멋진 신세계 질서>>, 장인철, 박문수 역, 가톨릭출판사, 1996. 참조.

16) Roland Robertson, *Globalization : Social Theory and Global Culture*, SAGE, 1994. 제1장 참조.

17) Malcolm Waters, *Globalization*, Routledge, 1995. 제3장 참조.

된 인간들의 저항의지를 줄이고 자발적으로 이러한 체제에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주어지는 물질적인 보상과 무한정 잡스러운 정보들을 쏟아 붓는 것이다.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이나, 알아서 백해무익한 정보들을 접하면서 세계는 좁아졌고, 누구 못지 않게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다. 정보의 홍수라고 일컬어지는 인터넷은 유통정보의 80%가 상업정보와 오락 정보이고¹⁸⁾, 국경을 넘어 전파를 쏘아대는 위성방송은 말초적인 감각을 자극하는 난해하기 그지없는 영상물과 서구문화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내용일색이다.¹⁹⁾ 늘어난 여행기회는 세계시민이라는 자각을 심어주지만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생각을 심어주지 않는다. 사이버 스페이스에 매달려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다.²⁰⁾ 사회관계에 대한 감각을 잃은 인간은 흔히 윤리의식도 약화되는 법이다. 이러한 인간들이 늘어나는 것은 동료인간들에게 한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니 인간성의 전문가요 인간구원의 성사인 교회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²¹⁾

이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늘의 심포지엄에서 다루는 사생활 침해문제를 마지막으로 정보사회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들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몇 년전에 ‘지존파’라는 이름의 젊은이들이 입수하였던 현대백화점 고액 소비고객 명단, 공공연하게 공무원과 정보제공업자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를 통하여 유출되는 신상정보들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유출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토플러가 말한 스마트 카드도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었거니와 의도와 상관없이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다수의 저항이 없이는 유례없는 정보통제사회가 될 것이라는 게 비단 기우만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알아야 할 정보에서 소외당하고, 자신의 모든 정보를 상업적인 동기와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용당하게 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저 복종일 뿐인 것이니 우리가 문명의 개화가 아닌 퇴보를 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서 기술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기술은 순수한 이용보다 악용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였는 바 그러한 기술의 일종인 정보기술도 그리 다르지 않다.²²⁾ 결국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문제의 핵심은 인권침해가 어느 시대보다 심각하게 일어나기 쉬운 사회라는 점이다. 성서와 거룩한 전통의 핵심을 함축하여 사회적으로 표

18) Daniel Burstein & David Kline, *ROAD WARRIORS ; Dreams and Along The Information Highway*, A Dutton Book, 1995. 145-180.

19) 김영석,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출판, 1997. 428-432쪽 참조.

20) C.A. 반 퍼슨, <<급변하는 흐름속의 문화>>, 강영안 역, 서광사, 1994. 254-264쪽 참조.

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현장>>과 역대 교황의 사회회칙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주제이다.

22) 뉴미디어를 연구하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미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낙관론을 펼치면서 궁극에는 이것이 사생활 침해 궁극에는 인권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현한 것이 가톨릭 사회론이라고 한다면 인간존엄성의 위협과 파괴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교회의 중심적인 사목실천의 과제가 되는 셈이다.

III. 사목실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놓게 될 정보사회에 대하여 가톨릭 교회는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가? 이미 필자는 여러 논문에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경제적 격차, 이른바 정보격차에서 빚어지는 문제들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가톨릭 사회론은 근래 백년동안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서 노동의 우위성 곧 인간의 우위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존엄성을 계속 강조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제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모사(Simulacra)가 진짜를 압도하고 모사가 진짜 행세를 하는 사회²³⁾, 그리고 돈과 학력이 있고 기술있는 사람만이 기를 펴며 살 수 있는 세상에서는 인간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진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이다.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르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분배정의(사회정의)에 대한 관심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공히 포함하는 생존의 문제임을 자각하는 게 필요하다. 관심에 그쳐서는 안되고 구체적인 사목정책으로, 사목실천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은 이제껏 생각해 온 것처럼 교회의 전산망 구축을 통하여,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한 진리의 전파를 통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정보사회의 인간문제와 그 사회에서 교회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구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고의 논지이지만 인간의 문제를 고민할 때 인권의 문제에서 접근해야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교회가 보여온 비사회적이고 비실천적인 태도는 지배와 피지배의 경계선에서 양자의 양보와 균형, 그리고 인간성의 진보를 이루어야 할 역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제까지와 같이 뒤를 쫓아가며 피해자를 거두는 야전병원이 될 것이 아니라 미리 길목을 지키면서 앞서 예방하고 문명의 이기들이 흥기로 돌변하지 않도록 첨병노릇을 해야 하겠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교회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미래에도 구원의 성사로, 한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역할에 만족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것이다.

23) J. Baudrillard, *Simulations*, New York : Semiotext, 1983.

발제2

주민카드의 올바른 이해

내무부

I.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는 1950년 각 시·도의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시·도민증제도를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여 국가신분증제도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주민의 거주관계를 등록하여 선거·조세·교육·취학·병역·복지·주택 등 국가 주요 행정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의 인적사항을 국가가 적은 비용으로 공증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68년 11월부터 주민 각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현행과 같은 주민등록표를 관리하면서 우리나라 국적과 호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거지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인적사항과 주소, 가족사항을 신고받아 등록한 후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여 주고, 만 17세가 되면 호적과 병적 및 신원을 확인한 후 개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다.

2. 주민등록증 경신 연혁

1968. 5. 29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이상의 국민에게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며, 7년 뒤인 1975. 7. 25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17세까지 확대하여 주민등록증을 1차 경신하였고, 8년 뒤인 1983. 10. 29 주민등록증의 모형을 종형에서 횡형으로 바꿔 2차경신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주민등록 활용

읍·면·동에 신고된 주민등록은 국가의 행정수행과 국민들의 인적사항을 공증해 주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방·교육·조세 등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이행과 주택,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복지업무 및 금융설명제 등에 이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각종 증명서 발급과 취학·취업·은행거래·부동산거래·각종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의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 읍·면·동간 온·라인전산망이 구축되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II. 주민카드사업 개요

1. 주민카드사업 추진배경 및 경위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대부분이 14년전인 '83년에 발급된 것으로 용모변화 등으로 사진만으로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 모양이나 재질 및 위·변조 방지수단 등이 다른 신분증 보다 뒤떨어져 사진 등을 바꾸어 붙인 여권 위·변조사건, 은행대출 및 토지사기사건, 미성년자의 유통업소 출입, 범죄자의 신분위장 등에 악용되고 있는 등 경신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신분을 증명하고자 할 때 주민등록증에 가족관계나 주소 등이 없어 주민등록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관계로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전수가 년간 1억7천만통이나 되어 국민들이 증명발급을 위해 읍·면·동을 방문하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발급인력등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제증명의 확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88년 한국전산원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 13개증명을 수록한 '다목적통합신분증'의 발급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산망조정위원회」에 보고하였고, 1994. 2 행정체신위원회에서 주민등록증을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등을 수록한 IC 카드로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내무부에 제시하였으며, 외무부와 은행 등 민간단체에서도 주민등록증을 보안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첨단카드로 경신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내무부는 주민등록증을 경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종이증명, 은행의 신용카드와 같은 자기카드, 그리고 전자카드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위·변조를 막을 수 있고 국민편의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명이 담긴 전자카드로 경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전산원과 학계의 연구결과를 받아드려 주민등록증을 전자카드로 일제 경신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새로 경신하는 주민등록증은 국민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주민등록등·초본사항과 인감 및 자격사항만 다를 뿐 주민등록을 기초로 작성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을 수록한 다목적 전자카드로 제작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 '95. 4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95. 6월부터 '96. 2월까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절대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확보하였고, '96.6월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으로 확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금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뉴스나 시사·과학·학술 정보를 안방이나 사무실 책상 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컴퓨터를 통한 즉석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은행 거래나 물건 구입을 컴퓨터와 통신망을 통해서 하고, 음식값 계산도 자기카드 하나로 해결하는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에서 정보화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유독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만은 종이형태에 머무르고 있어 국민들은 증명서가 필요할 때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국내·외의 신분증이나 은행카드 등이 급속도로 전자카드로 전환하는 추세이고, 또한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이 급진전되고 있는 세계적인 조류속에서 국민편의증진과 정보화마인드 확산, 그리고 행정의 효율화와 선진화 등을 위해서 주민카드사업은 최적의 선택이 아닐수 없다.

2. 주민카드의 구조 및 기능

IC카드, 또는 스마트카드라고 불리우는 전자카드는 은행의 신용카드 크기의 플라스틱카드에 IC(Integrated Circuit)형태의 초소형컴퓨터가 부착된 카드를 말한다.

IC는 극소형 기판위에 8Bit CPU(중앙처리장치)와 8Kbyte ROM(프로그램저장용 기억장치), 8Kbyte EEPROM(자료저장용 기억장치), 통신장치(컴퓨터 연결기능), COS(Chip Operating System : 운영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뛰어난 보안기능이 강점이다.

주민카드는 이러한 전자카드 하나에 각각의 공공기관이 이미 전산망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적·자격자료를 담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목적카드이다.

주민카드에는 총 35개 항목이 수록된다.

카드 앞면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양 위에 이름·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카드뒷면에는 운전면허증의 자격사항과 의료보험 유의사항 및 지문을 인쇄하며, IC내에는 주민등록 9개항목, 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 각 8개항목·인감, 지문을 합쳐 총 34개항목을 입력하여 공공기관·학교·은행·기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등·초본과 병역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인감의 경우 공공기관·은행 등에서 IC내에 수록된 등록인감과 컴퓨터를 통해 민원인이 소지한 실제 인감과 비교·확인하여 인감증명서로 사용하게 된다.

운전면허증은 주소 이동사항 미기재로 인한 과태료 처분제도가 없어지고, 경찰관은 교통법규 위반자의 범칙금 통지서를 자동으로 출력하므로 수기로 작성함에 따른 오

류와 단속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의원·약국 등에서는 주민카드로 의료보험자격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별로 의료보험증이 지급되므로 보다 많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가입상황을 수록함으로써 연금제도의 투명화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카드의 곁면에는 화폐수준 이상의 비표처리를 하고, IC내에는 강력한 보안장치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여권변조, 금융사기, 미성년자 불법고용 등 각종 사회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IC내에 입력되므로 컴퓨터나 통신망을 이용할 때 정보화의 열쇠로 사용할 수 있어 각종 컴퓨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수기로 작성·제출하던 각종 신고서나 신청서도 주민카드를 이용하여 자동화할 수 있다.

3. 주민카드의 이용방법

주민카드를 전자카드 열람기와 S/W가 설치된 컴퓨터에 넣고 개인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기본 인적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사항은 교통경찰만 열람할 수 있고, 의료보험사항은 병원 등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다.

4. 주민카드 발급절차

주민카드는 중앙의 발급센타에서 일괄 제작·발급하게 된다.

기본문양이 인쇄된 플라스틱카드에 IC를 부착하여 백지 주민카드로 제작하고, 백지 카드에 사진과 기본인적사항 등을 인쇄한 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문양이 조각된 홀로그램을 입히고, IC내에는 현재 각 전산망별로 관리하고 있는 증명의 자료를 입력하면 카드발급이 끝난다.

일제발급 이후 새로이 17세가 되는 사람이나 분실 등으로 주민카드를 재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동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면 2~3일후에 본인에게 새로운 주민카드를 발급하여 준다.

지금은 증명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읍·면·동,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장, 의료보험증은 의료보험조합에 가야 했으나 주민카드가 발급되면 읍·면·동 한 곳에만 가면 된다.

또한, 이사를 하거나 의료보험사항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해당기관이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IC내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주민카드는 새로 발급하지 않는다.

5. 추진일정

주민카드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오는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며, 총 2,735억 원이 투자된다.

'96년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97년에는 주민카드발급을 위한 법령개정과 발급센타구축을 추진하며, '98. 4월 제주도부터 카드를 발급한 후 '98. 10월부터 만17세 이상 전국민에게 카드를 일제 발급하여 '99. 10월부터 완전 실용화할 계획이다.

'98. 10월부터 '99. 9월까지는 주민카드와 현재의 증명이 함께 사용되나 '99. 10월부터는 주민카드 하나로 단일화된다.

6. 국민여론 수렴

주민카드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의 여론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속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95년 과천시 중앙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96. 10. 30과 11. 2에는 내무부와 시민단체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카드 시행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와 보호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금년 4월에는 한국프레스센타, 제주도 등에서 주민카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협동으로 4차례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카드 운영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해 집중토론을 거쳤다.

공청회와 토론회에서 주민카드를 반대하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크게 개인정보의 통합과 정보악용시 기본권 침해, 주민카드 분실시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전산망 장애시 대책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개정(안)에 자료의 집중과 악용을 방지하는 법규정을 신설하고, 분실 주민카드나 내부자에 의한 자료유출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기한 문제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대부분 마련하였다.

7. 기대효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증명이 최첨단의 전자카드로 바뀌면서 휴대가 간편하게 되고, 하나의 카드로 여러가지 증명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며, 모양이나 재질도 어느 신분증이나 카드보다 뛰어나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목적복지카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주민카드에는 현재의 증보다 사진이 확대(증명판→반명암판)되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사진 위에는 특수 보호장치인 홀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기재 내용을 위·변조할 수 없어 현행 주민등록증과 관련한 각종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년간 1억 7천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증·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을 주민카드

가 대신하게 되어 국민들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산원에서는 주민카드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하여 연간 수천억원이 절약되는 것으로 연구·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운전할 때는 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고, 병원이나 의원·약국 등을 방문할 때도 지금은 의료보험증이 한집에 한 장밖에 없어 급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민카드는 직접 휴대하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전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에 의한 각종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하며, 주민카드에 연금가입사항을 수록하여 각종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카드가 21세기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모든 행정기관이나 은행·보험회사·병원 등에서 민원이나 어떤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 첫단계가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를 작성하는 일로서 신청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신청서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한 후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민카드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전산자료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 단말기에 주민카드를 넣고 해당 민원사항을 선택하면 신청서나 신고서 작성이 끝나므로 민원인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 모두 업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망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III.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

1. 주민등록제도의 필요성 및 외국의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당초 국가목적 수행을 위해 제정된 제도라 할지라도 지금은 국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뿐만 아니라, 선거·조세·취학·병역·복지·주택 등 국가의 주요 행정 사무처리의 근간으로 정착되어 있다.

또한, 금융설명제·부동산설명제·공무원 재산등록·국토정보센터·국민연금제도 등 국가주요시책도 주민등록제도를 토대로 하지 않고는 시행할 수 없는 등 주민등록제도는 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 전국단위의 주민등록제도가 없어 국회의원선거 등을 실시할 때 선거인명

부 작성에 3개월동안 총 6조엔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전산망이 구축되어 있어 단 하루만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있어 종이값 정도의 비용만 소요되므로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도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선거·운전면허경신·연금업무 처리·여권발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총 384억 엔을 투자하여 주민기본대장의 전국 네트워크화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전국민에게 고유번호(CODE)를 부여하고 성명·사진·주소 등을 수록한 IC카드의 발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태어날 때 전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이 번호를 토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전국민의 65%가 운전면허증을 휴대하고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 및 출생증명서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분증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면적으로는 신용을 바탕으로 나라 전체가 움직이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철저한 개인정보 확인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사회보장번호를 기초로 그 사람의 기본 인적사항과 은행거래 내역·채무상태·재산상태 등 모든 신용정보를 전산망에 수록하고 신용정보관리센타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 주거나 세금을 조사할 때, 또는 사원을 뽑을 때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신용사회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철저하게 국민들의 신용정보나 재산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만·싱가폴·홍콩 등 대부분의 아시아권 나라에서도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독일·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도 주민등록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신분을 확인하는 제도는 인간이 집단을 형성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면 필수로 필요하게 되며, 특히 질서를 유지하고 의무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어느나라든 그 나라의 질서나 정서에 맞는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면 헌법상 규정된 국방·교육·조세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된다.

또, 주택·의료보험·국민연금 등 복지업무와 부정한 부의 축적을 방지하는 금융설명제·부동산설명제 등을 시행할 수 없어 국가체제 유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취학·입사·은행거래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 본인을 입증하기 위해 인적 보증인을 세우거나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되는 등 많은 시간과 경비를 부담해야만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미국의 경우도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의미가 없는 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생년월일과 성별·지역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이를 기재하거나 알려주기 전에는 타인이 알 수 없으며,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그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

또, 우리의 경우 각종서류에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되지만 미국은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 및 성별을 별도로 기재하는 불편이 있는 등 주민등록번호는 제도별로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의미가 없는 일반번호로 완전히 바꾸자면 전국민의 재산관련 공부나 학적부·은행통장·증권통장 등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하므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사회적으로 일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신규출생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의미없는 번호를 부여하자는 제안도 있으나, 이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번호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것과 다름없이 행정·은행·주택 등의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

또한, 지문은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문을 찍는다는 것은 분명 당해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쾌하지 못한 일이기는 하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사고나 각종 흉악범죄 발생시 지문이 피해자나 범죄자의 신분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그 폐지를 함부로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지문은 사회안정과 사고대비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본다.

2. 하나의 카드에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것은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보장을 침해

주민카드는 개인의 정보를 수록하므로 헌법제17조의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조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주민등록제도와 운전면허, 의료보험 등의 제도는 자기의 식별성과 자격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를 수록하여 증명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자기 식별성과 자격은 우리 나라의 경우 국가의 안정보장과 질서유지 및 공공의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것이며,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헌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

해할 수 없다”는 헌법제3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그러한 테두리안에서 국가의 질서유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주민카드 제도를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증명과 자료는 각각 분리된 방에 저장되며, 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증명기능을 현재와 같이 소관기관별로 해당업무 범위내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주민카드는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한 장의 카드에 여러가지 증명이 함께 담겨 편익이 크게 증진되는 반면, 국가적 입장에서는 현재와 같이 해당기관에서는 소관사항만 열람할 수 있고, 수록된 자료는 관련 법률에 의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국민의 신분과 자격사항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한편, 주민등록법개정안에서는 혈액형, 병원진료내역, 연금불입액, 교통법규 위반사항 등 사생활침해항목은 수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3. 각각 분산되어 있는 자료가 발급센타로 집중·통합될 경우 국가권력에 의한 악용 및 국민을 감시·통제 우려

주민등록법개정안에 주민등록외의 자료는 주민카드 발급시에 한하여 발급센타에 집중되고, 주민카드발급 목적으로만 사용된 후 발급이 완료되면 즉시 삭제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주민카드에 담는 각종자료가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담당자를 극히 제한하고, 한사람이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모든 자료의 처리내역과 처리시간 및 열람자의 인적사항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기록·관리토록 함으로써 내부자의 자료악용을 기술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관합동으로 「주민카드자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료관리기관장에게 개인정보보호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모든 자료의 처리내역이나 열람사항을 감시토록 함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4. 주민카드사업은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통합신분증이므로 특별법 제정후에 추진

주민카드사업은 주민등록법제17조의8제3항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민등록증경신사업이다.

주민카드에 대한 법적근거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지금은 발급 준비단계로 '98년도에 주민카드를 발급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7년내에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민카드사업을 관련법 개정에 앞서 추진하게 된 것은 기술개발 진행상황에 따라

검증절차를 거쳐 시행가능성 여부를 그때 그때 판단해야 하는 정보화사업의 특수성 때문이었으며, 법을 먼저 개정한 후 기술적으로 제도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자료는 개별법령에 의하여 권한있는 소관기관이 현재와 같이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그 권한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법의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만약, 특별법을 새로 제정할 경우에는 오히려 제도적으로 개인자료의 통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5. 개인정보 유출시 사생활 침해 우려

주민카드를 분실하거나 해커나 내부자 등에 의해 개인자료가 유출될 경우 사생활침해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자료의 불법유출로 이 점을 우려하여 주민카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자료보호에 가장 최역점을 두고 있으며,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아무 피해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 최신의 기술을 동원하여 보안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기술적 장치로는 주민카드 위·변조방지와 분실카드 악용방지를 위해 비표와 보안키, 암호화 알고리즘, 레이저를 이용한 홀로그램 부착, 비밀번호, 잠금장치(LOCK) 등을 개발하였다.

자료가 기록되는 IC는 업무분야별로 별도로 방을 설치하고 업무별로 보안키를 내장하여 타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각 단말기에는 보안카드를 지급하여 사용자의 인적사항·처리시간·처리내역 등을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관리도록 함으로써 내부자의 자료유출을 방지하게 된다.

또한, 통신망은 별도의 폐쇄망으로 구성하여 외부침입자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센터에 방화벽(Firewall) 등을 설치하여 해커침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각 단말기는 센터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도록 각종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전산망간의 연계는 센터 수신전용으로 구성하여 자료교류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센터는 증명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수신받아 처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초기 일제발급시 발급기간 단축과 각 증명간의 자료일치를 위해 일시적으로 자료를 종합관리하지만 일제발급이 끝나면 각 기관으로 분산관리하고, 신규·재발급에 필요한 자격자료만 수신받아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센터의 모든 자료처리내역과 처리시간 및 시스템 사용자에 대해서는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자료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통제 감시시스템을 설치·운영 한다.

제도적 장치로는 주민카드 자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시기구로 민·관합동의 “주민카드 자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설 운영하게 된다(주민등록법개정안제18조의 6)

주민카드자료 보호를 위해 자료관리기관장과 자료이용자의 의무규정을 신설(주민등록법개정안 제18조의4, 제18조의5)하여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주민카드 자료의 멸실·도난·자료유출 방지의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카드 자료접근자의 제한을 위해 시스템운영자와 업무운영자를 지정·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주민카드자료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수록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주민카드의 개인자료 오·남용과 유출사례 방지를 위해 최대한의 자료보호조치를 할 의무(분실카드의 사용금지조치 포함)와 주민카드 자료의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는 의무도 부여하였다.

그리고, 주민카드 자료의 불법유출자·주민카드 무단열람자·불법사용자·위·변조자 등은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주민등록법개정안에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에 의해서도 정보의 불법유출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며 형법제314조 및 제316조에 의해서 전산망해킹시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정보유출로 개인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제2조와 민법제750조 및 제751조에 의거 피해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6. 주민카드 수록항목

주민카드에는 현재 사용중인 주민등록증·주민등록등/초본·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인감 등의 증명서 내용과 지문 이외에 수록되는 자료는 없다.

카드 앞면에는 사진과 성명·주민등록번호·카드발급일자·발급기관장이 표기되고, 뒷면에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면허종별·적성검사기간·면허조건·면허증 발급 당시 지방경찰청장과 의료보험증 유의사항 및 지문이 인쇄된다.

IC내에는 34개 항목이 수록된다.

주민등록분야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호주·세대사항·병역사항·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읍·면·동코드 등 8개항목, 운전면허분야는 면허종류·면허번호·발급기관·면허조건·적성검사기간·교부일자·정지/취소여부·면허상태 등 8개항목, 의료보험증의 경우 보험자 기호 및 명칭·보험자 구분·관리번호·피보험자·피부양자·자격취득일 및 상실일·진료지역·유효기간 등 8개항목, 국민연금의 경우 최초취득일, 가입종별·총가입월수·급여종별·수급증서번호·최종수록일·가입상태·최종보험료 납입유무 등 8개 항목이며, 이외에 인감과 지문·발급기관 등이 수록되나 인감의 경우는 본인이 선택하도록 했다.

현재 각각의 증명에 기재되는 병원진료사항이나 교통법규위반사항·직업·재산상태·국민연금 불입액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항목은 전혀 수록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개정안에 병원진료기록·재산상태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수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들 항목의 수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혈액형의 경우 응급환자 등을 위해 수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들이 본인의 혈액형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록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은행의 신용카드 등 돈과 관련되는 기능은 신분증과 그 관리목적이 다르고 위험의 따르기 때문에 수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록할 계획이 전혀 없다.

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권고안 준수 여부

경제개발기구(OECD)의 개인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권고안에 따르면 ① 개인정보화일에는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되고 ②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④ 정보주체는 정보공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⑤ 정보수집이전에 법규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⑥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카드는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서

첫째, 주민카드에 수록되는 자료는 현재 주민들이 휴대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의 내용과 주민등록등/초본사항·등록인감·국민연금 가입상황 등 국민들이 신고하였거나 이미 알고 있는 사항으로 개인이 모르는 비밀자료는 전혀 입력되지 않는다.

둘째, 수집되는 자료는 주민등록·운전면허·의료보험 등의 제도운영과 주민등록등/초본·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 등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데 사용된다.

셋째, 주민등록사항이나 운전면허·의료보험자료는 모두 국민 스스로가 전입신고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료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동의한 사항으로 주민등록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의 경우 조세·교육 등 국가행정 수행과 국민들의 인적정보 공증 등 국가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도이다.

넷째, 주민카드에 수록된 자료는 자료주체가 자료의 제공권한을 갖게 되어 있다.

다섯째, 각 개별 자료의 수집은 주민등록법·도로교통법·의료보험법·국민연금법·인감증명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카드에 수록된 모든 자료는 자료주체에 의해 언제라도 열람 수정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주민카드는 OECD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권고하고 있는 6 가지 항을 법에 의해 최대한 준수하고 있다.

[관계법령]

- 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 인감증명법제3조(인감신고)
- 도로교통법제69조(면허증교부 등)
- 국민연금법제19조(신고)
- 의료보험법시행규칙제5조 및 공교의료보험법제2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등

8. 사생활 및 인권침해

주민카드 발급을 위해 발급센타에 모이는 자료에 대해 내부자에 의한 자료유출과 사생활 침해 및 국민 감시용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우려를 나타내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주민카드사업은 위해 새로운 자료를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무부에 있는 주민등록전산자료와 경찰청의 운전면허 자격사항, 의료보험기관의 의료보험 자격사항중에서 국민편의 도모에 필요한 항목을 추출하여 하나의 전자카드에 수록하는 것으로 발급센타에 자료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전자카드에 자료가 모이는 것이다.

즉,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카드에 여러개의 증명과 자료가 수록되지만 전산망이나 센타의 자료관리 형태는 현재와 같이 각 기관에서 관리·운영하게 된다.

현재 의료보험증에 있는 병원진료내역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직업 등 사생활을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전혀 입력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연금 총불입액 등 재산관련사항도 수록하지 않고 인감도 국민이 원할 경우에만 입력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카드의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각계의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가장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특히, 분실카드 등을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진의 크기를 최대한 확대하여 본인식별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분실카드나 타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내부자의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서명의 인증기능을 이용한 업무처리권한을 부여하여 외부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모든 자료처리 내역과 시간, 취급자의 인적사항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이 함은 물론, 불순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9. 주민카드에 여러 증명이 통합되고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를 둔 것은 국민을 감시·통제하려는 의도

전산센터의 자료는 일제발급시에만 통합되며, 감시·통제 목적의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감시·통제 목적으로 자료를 열람케 하거나 제공할 수도 없다.

전산센터의 자료는 카드발급에만 사용되고 자료를 취급하는 담당자도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법에 의거 자료제공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등 업무담당자 외에 어느 누구도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주민카드는 자료를 저장하는 방식 물리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어 각각의 증명자료가 따로따로 저장되고, 자료를 열람하는 방법도 각각의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교통경찰은 현재의 운전면허사항만 열람할 수 있고, 병·의원 등에서는 의료보험사항만 열람할 수 있는 등 하나의 카드에 여러가지 증명이 담겨 있으나 증명의 운영이나 열람범위는 현재와 동일하다.

또한, 현재의 주민등록증 소지의무를 주민등록법개정안에서는 폐지하였으며, 국민들이 은행이나 병원을 찾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등 필요할 때만 소지하여 사용도록 함으로써 주민카드의 국민통제 소지를 제거하였다.

10. 전산망 연계목적 및 기능

주민카드전산망에 연계되는 전산망은 운전면허전산망, 의료보험전산망, 국민연금전산망 등 3개이며, 이는 주민카드에 담기는 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의 자격관련자료를 수신받기 위한 목적이다.

이 목적외에는 전산센터에서 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 전산망의 자료를 열람할 수 없고 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전산망에서도 주민카드 전산센터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전산망간의 연계는 오로지 주민카드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각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송신하면 주민카드에 수록될 자료만을 추출하여 카드를 만드는 센터로 보내는 수신전용 전산망이다.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무단으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전산망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의 사전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시스템을 설계·개발해야되는 등 불법으로 연계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은행전산망의 경우 현재 모든 은행간을 상호 연동해서 타 은행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만약 타은행의 자료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면 금융권에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는 각 은행전산망간에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어 타은행의 전산자료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11. 주민카드 분실시 대책

여러가지 증명이 담긴 주민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에 개인자료 유출의 위험이 따르고 국민들은 카드를 재발급 받는 기간동안 불편을 겪게 된다고 우려하는 지적이 있다.

현재는 지갑을 잃어 버렸을 경우 대부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거의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고, 지갑을 습득한 사람은 분실자의 인적사항을 육안으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카드에는 대부분의 자료가 IC내에 수록되어 있고 비밀번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와 카드열람기 및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때도 운전면허사항이나 의료보험사항은 교통경찰이나 병원 등에서 소지하고 있는 보안카드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민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발급센타에 분실카드로 등록되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분실신고 즉시 「주민카드임시증명서」를 발급하고, 2~3일내에 주민카드가 재발급되므로 큰 불편은 없다.

참고로 타인카드의 불법사용 및 자료열람시에는 3년이하 징역형이 부과된다

12. 비밀번호를 잊어 버렸을 때 대책

노약자나 정신지체장애자 등이라 할지라도 주민카드 곁면의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사항만으로 대부분 신분이 확인된다.

상세사항의 열람이 필요할 때 비밀번호를 잊어 버렸다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 비밀번호제 도입은 노령자등에게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비밀번호는 주민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타인이 본인의 증명행사를 못하도록 자신의 자료를 보호해 주는 장치의 하나이며, 노령자등은 현재 대부분이 타인의 조력을 받아 권리행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논리가 아닌가 한다.

13. 주민카드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민원중단 등 혼란이 예상되는 이에 대한 대책

통신망이나 주전산기 등 주민카드전산망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스템을 이원화함으로써 장비 일부에 장애가 발생되어도 민원서비스에는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주민카드는 전산망과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되어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다.

IV. 맷는 말

현재 서로 다른 행정기관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 등 각종 증명업무의 분산관리와 노동집약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과다한 행정비용을 들게 하고 있다.

주민카드는 최대의 서비스산업인 행정에 있어서, 민주화·세계화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여 현행 통제개념의 신분증제도를 고객지향·복지서비스 개념의 새로운 신분증제 도로 바꾸는 작업이다.

주민카드사업은 21세기 정보화사회에 적극 부응하면서 국민들에게는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관련산업의 발전을 통하여 2000년대 기술선진국으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나아가 거래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성과 국가사회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다.

이처럼 의의가 큰 주민카드사업에 대하여는 전문가집단에 의해 그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끝나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주민카드에 대하여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도 이미 제도적으로 철저한 보완방안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모두가 주민카드 도입을 긍정하고 주민카드가 국민복지카드로서 국민들이 모든 생활분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발전적인 문제의 논의에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주민카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기대해 본다.

발제3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막아야 하는 이유

변호사 김기중

1. 전자주민카드의 의미와 정부의 일방통행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대하여 주로 위·변조가 쉬운 종이신분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전자카드로 바꾼다는 점과 주민등록등초본의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사회의 모든 부분, 즉 정치, 행정, 문화, 경제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혁명적인 제도이다. 전자주민카드에 삽입되는 IC칩은 8bit CPU와 루미 단일구조로 되어 있어 읽고 쓸 수 있으며 COS라 불리는 독자적인 운영체계에 의하여 구동되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소규모의 컴퓨터이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성인인 모든 국민이 전국 각지에서 소지하게 될 3,400만 개의 소형 컴퓨터가 중앙 발급센터의 대형컴퓨터, 그리고 발급센터의 중앙컴퓨터와 연결된 전국 각지의 수십대의 데이터베이스, 다시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수만대의 단말기들과 상호작용하게 되는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단순히 종이신분증이 전자방식의 신분증으로 바뀌어 본인확인을 전자적으로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지만 전자주민카드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일정한 행정서비스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나아가 정부는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을 전제로 국민을 관리하며 선거를 치르고 대부분의 정책결정을 할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첫번째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제도를 정부의 일개 부처의 몇몇 사람이 전담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관하여 정부는 전혀 국민적 동의도 국회에서의 토론도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예산의 뒷받침도 없이 구체적인 사업을 이미 진행시키고 있다. 정부는 1988년부터 이 제도를 준비하여 왔으면서도 1995년 4월에야 이를 일반에 공개하였는데, 그것도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노력으로 이제부터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정도에 그쳤다. 뒤늦게 전자주민카드 문제의 심각성을 안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시행을 전면반대하자, 정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계획이 확정되었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고칠 수 있는 문제점만을 지적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그 성격상 정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시행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데, 이렇듯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마땅히 취하여야 할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모든 국민의 권리의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시행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된다. 내무부 관계자는 전자주민카드 제도의 시행에 따르는 위험성을 정부도 충분히 알고 대처하고 있으니 정부를 믿으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를 믿어 달라고 부르짖어도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면 그것은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를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정부가 국민을 평소에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국민의 몫이고 정부나 정부에 소속된 사람은 그러한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2. 모든 국민을 재고 조사하듯 숫자로 관리하고 있는 나라에서...

국가신분증이란 원래 국민을 통제하고 일정한 부류의 사람을 차별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이다. 스페인의 프랑코정권이나 나찌와 남아공화국 연방에서도 국가신분증은 일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 또는 일정한 인종을 사회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나찌를 경험한 유럽사람들은 국가신분증 자체에 체질적인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남북대치상황을 평계로 간접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8년에 도입되었다. 이후 그 수록내용이 확대되고 소지의무가 부과되는 등으로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발전된 나라들 중에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이웃나라인 일본 등과 같은 나라에서는 국가신분증이 아예 없고 일부 국가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러한 신분증 발급이 강제적이 아니거나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신분확인 목적으로 도입되었을 뿐이다. 한편 국가신분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도 많기는 하나, 우리의 주민등록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통제장치를 갖춘 특유의 제도이다. 우리의 제도는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유일불변의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전 국민이 신분증 발급이 강제되고 있으며, 그러한 신분증과 결합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지와 거주지를 이동할 때마다 등록을 하도록 하는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3가지 강제적인 제도는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운영됨으로써 전 국민을 단일한 체제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전 국민고유번호제, 전 국민 주민등록제, 전 국민 신분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런데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인격에 관한 모든 것을 강제적으로 등록시키고 목록화함으로써 재고조사가 가능한 하나의 물건처럼 인간을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이처럼 전 국민을 강제로 등록하도록 하고 고유번호로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도이기에 영국은

제2차대전중에 전쟁수행 목적 때문에 도입하였던 개인고유번호제도를 폐지하였고 스페인도 프랑코 독재시절에 도입하였던 고유번호제를 폐지하였으며, 최근에야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선택한헝가리에서조차도 정부가 도입하려던 개인번호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으로 도입되지 못하였다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일련번호로 나열관리하고 주소와 그 이동상황을 강제등록하도록 한 것도 부족하여 정부는 이미 1993년에 이를 모든 정보를 전산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현황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였는데, 이것도 모자라 이 모든 시스템을 전자적 방법으로 하나로 묶어 버리는 거대한 국가컴퓨터시스템을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 전자주민카드 제도이다.

사실 우리는 남북대치의 상황에서 각 개인에게 붙여진 고유번호가 어떤 명에가 될지 미처 깨닫기 전에 아무런 저항없이 그 속에 목을 밀어넣어 버렸고, 이러한 고유번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는 각 부문별로 집결되고 분류, 정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생활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주민등록제도, 그리고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제로 무분별하게 분류, 정리, 활용되고 있는 개인 전산기록에 대한 통제장치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제도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제도가 갖고 있는 심각한 반인간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이 제도부터 고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몇몇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이 이제 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증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전자주민카드 제도에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가 수록매체가 바뀐다고 바뀔 수는 없는 것이며, 사회의 여러 부분에서 주민등록증이 사용되고 있는 이유는 행정부가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제도를 전제로 여러 가지 행정행위를 하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관행을 답습한 기업체의 습성때문이지 주민등록제도 자체의 효용때문은 아닌데다, 그러한 효용은 주민등록제도나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국가신분증 제도나 주민등록제도를 두고 있지 않은 많은 나라의 사례를 보면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시정하지 않고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도입된다면,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은 결국 전자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3. 과연 복지지향적이며 국민에게 편리한 제도인가...

먼저 정부가 하루빨리 해 주었으면 하는 정보화 사업을 나열해 보자. 민원에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전산목록화하여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 정부 각 부처

의 정책결정과정과 그 결정내용을 전산화하여 공개하는 것, 정부가 만들어 낸 모든 문서를 비밀성을 갖는 것을 제외하고 전산망에 띄워 놓는 것, 모든 법령·내규·고시 등을 전산공개하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것, 수시로 변하는 농산물관련 가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 도서·정기간행물을 목록만이 아니라 전문(全文)을 전산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액수를 대폭적으로 늘리고 입법적 지원을 하는 것,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학술전산망을 상호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청와대를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소속부서, 직책, 하는 일 등을 말단 직원들의 것까지 공개하는 것, 지리정보전산망을 하루빨리 구축하여 공개하는 것 등등 수없이 나열할 수 있다.

하지만 현황은 어떠한가. 현재 제대로 이용가능한 공공정보는 국회도서관 등을 통한 문헌정보색인이나 총무처 행정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최근의 정부고시목록이나 법령정보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부처별로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관구성표와 장관의 프로필외에는 거의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혹시 있더라도 오래된 자료로 거의 쓸모가 없는 정보들이다. 복지행정과 관련한 전산화작업은 아직까지 내부행정을 전산화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그토록 정보화사회를 외치며 10여년 동안 추진한 정보화사업은 경찰전산망 등의 공안망, 세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징수하기 위한 국세전산망, 국민의 토지소유관리를 위한 토지종합전산망, 의료보험업무중 진료비 청구심사시스템 등 원활한 행정업무처리와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DB의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고, 정부의 정보화백서에 의하면 이러한 추진방향은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렇듯 정부가 추진해 온 전산화사업이 국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주는 전산화사업은 전혀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이미 추진되어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주로 행정의 편의와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것들이었다. 첫머리에 예를 들었던 국민에게 직접적인 편익을 주는 사업들은 행정부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업에 속하는 것들이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정책방향, 사업 우선순위, 사용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의 면에서 볼 때 직접적인 국민편익을 가져오는 사업은 결코 시행될 수가 없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공을 들이는 전자주민카드 사업도 정부의 어떠한 혼란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큰 편익을 가져다주겠지만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거의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에 관하여 국민복지카드 운운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 편의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복지수준은 GNP나 예산에서 복지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나 주관적인 삶의 질로 보나 국제기준에 형편없이 미달하여 OECD가입국가중에 하위권에 속해 있다. 복지서비스의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증명서를 개선

한다고 복지서비스가 개선되고 복지행정이 선진화되는 것인가.

한편 전자주민카드로 모든 국민이 편리함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에서는 불편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가장 먼저 우려되는 부분은 전자주민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불편함이다. 전자주민카드는 모든 것이 한 장의 카드에 통합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그것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모든 것을 분실한 것과 동일한 불편함을 겪어야 한다. 지금도 1년에 300만명이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고 있는데, 현재에는 대체수단이 있으므로 이 숫자는 대체수단이 없는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훨씬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전자주민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임시증명서를 발급할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과연 전자주민카드에 포함되어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등을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 갈 뿐만 아니라, 임시증명서를 '즉시' 발급받기 위해서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사람은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임시증명서를 발급받으려 동사무소에 출두하여야 하고 분실 또는 도난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 검증을 받아야 하거나 의심을 받아야 하고 전자주민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일정한 책임과 현재보다 더 과중한 재발급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증명서의 발급이나 신원확인 문제에 대한 컴퓨터 의존도를 크게 증가시키게 되므로 시스템의 오류나 고장, 정전 등의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한 문제로 인한 불이익은 주로 개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더구나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의 증가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잘못된 주민등록정보로 국민연금상의 의사결정을 한 경우 그 책임이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 또는 중앙의 발급센타에 있는지, 이 경우에도 주민등록관리자의 책임인지 아니면 전산담당자의 책임인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인지를 밝히는 것은 어려워지고, 따라서 담당자들은 컴퓨터로 처리된 것임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게 마련이며 그 불이익은 개인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전자주민카드는 개인의 다양한 상태를 무시하고 강제로 발급하는 것이기에 정보화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의 많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질낮은 행정서비스로 전락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특히 모든 국민에게 비밀번호를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두고 결코 질높은 서비스라거나 국민복지카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을 금쪽처럼 나누어 쓰는 바쁜 도시사람들에게 전자주민카드는 오히려 큰 불편을 줄 가능성이 많다. 바쁜 도시사람들은 대부분 민원 서비스를 가족이나 기타 민원대행업소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주민카드는 타인에게 맡길 수 없는 성질의 중요한 카드(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아야 한다)이기에 모든 것을 스스로 처리하여야 하는 번거러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4. 거미줄처럼 얹혀있는 국가전산망

이미 국민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전산화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 대조가 가능하며 아직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들도 서로 연결될 예정으로 있다는 점은 전자주민카드 문제를 떠나서도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주민등록전산망만을 보더라도 인구이동·투표권자 등 114종류의 제목으로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민등록DB를 중심으로 외무부의 여권발급DB, 경찰청의 신원조회DB,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DB가 서로 연결되어 여권발급민원전산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 내무부의 지적관리DB, 주민등록DB,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DB 등이 서로 연결되어 개인별, 세대별 토지현황은 물론이고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 자동차종합정보망은 이미 교통부, 전국의 차량검사소, 교통안전진흥공단에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DB와 보험전산망,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과도 연결할 계획이며, 국민복지망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의료보험망이 식품위생전산망,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전산망과 연결되고 다시 주민등록전산망과도 연결될 계획이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우리가 모르는 어느 곳에서인가는 어떤 개인에 관하여 어디에서 태어나 어느 곳에서 살며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떠한 병을 앓아 어느 곳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자동차와 토지는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고 가족 전체로 보면 어느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등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가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도입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전자주민카드 발급센타의 중앙컴퓨터에 연결되거나 초기에는 연결되지 않더라도 이후에 연결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대부분 신상기록을 포괄하여 보유하면서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별다른 통제장치없이도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부 또는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시스템 자체가 갖는 고유한 속성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많은 정보를 중앙의 발급센타에 통합하는데다 각각의 전산망을 상호연결하여 기본정보를 교류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므로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있다. 이한영씨의 주소가 쉽게 유출되어 결국 그러한 주소유출로 인하여 한 사람이 희생된 것은 결국 주민전산망에 연결된 경찰전산망 때문이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의료보험공단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5.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는 사실 정부를 포함하여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강제발급하는 국가신분증 전부를 스마트카드로 제작하여 운용하겠다는 나라가 없는데다, 우리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주민등록제도가 사회경제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전용되고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어떠한 용도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주민등록증 등 주민등록제도를 전제로 하는 여러 증명서가 어느 분야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없으므로 이 제도를 변경, 폐지 또는 새로운 제도로 바꾸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 수 없음은 물론, 당연한 결과로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도입하였을 때 어느 분야에 어떠한 사회, 경제적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정부나民間부분이나 모두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저렇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추측을 하는 정도이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도입되면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된 다양한 정보와 이들이 모두 디지털 정보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몇가지 부가적인 장치만으로 그 정보를 이용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전자주민카드를 전제로 하는 전자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먼저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평계로 수시로 실시되는 불심검문, 차량검문 등을 할 때 전자주민카드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필수적인 것이 될 것이다. 실수에 의한 것인 든, 고의에 의한 것인 든, 또는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상당한 위험에 처하거나 큰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필요에 따라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추가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전자주민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하고 있어도 현실운영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하지만 정부는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법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 현재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함부로 불심검문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제한규정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번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내면서 전자주민카드의 소지의무를 삭제한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는 외국인 근로자, 중국계 불법입국자 등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당연하게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북한계 입국자들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거나, 통일이후 북한동포를 배제하고 통일이후의 사회체제를 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중심으로 유지하는 주요한 틀로 기능할 것이다.

병원과 은행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외 정부 관공서는 물론이고 공공도서관의 출입에도 전자주민카드를 통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병원과 은행, 그리고 정부 관공서의 출입때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

부분의 전자주민카드 판독기는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중앙컴퓨터에 접속되어 사용하는 카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므로 그 사용기록이 남게 될 것이다. 설사 정부가 그 사용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주장하여도 그 기록이 남을 것이라는 의심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의심이 있는 한 병원이나 은행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크게 제약될 것이다.

한편, 경찰이 소지하여 전자주민카드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휴대형 카드 판독기의 경우도 도난차량인지 여부와 수배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불일 예정이므로 중앙컴퓨터와 무선접속되는 한도에서 전자주민카드의 사용기록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만약 중앙컴퓨터가 보내는 전산자료가 잘못되어 있거나 휴대용 판독기가 전자주민카드를 잘못 읽기라도 하는 날이면 영락없이 범죄자로 몰려 연행되어 갈 것이다. 휴대용판독기를 이용하여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는 당연히 해당 기록이 남게 된다.

한국전산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자주민카드는 컴퓨터통신과 전자거래에서 본인확인을 하는데 사용될 것이며, 공공데이터베이스의 접근제어, 공공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에도 카드판독기만을 설치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다. 각각의 사용기록도 각각의 관리시스템에 당연히 남게 될 것이다. 또한 대형음식점이나 호텔 등도 카드판독기만의 설치로 전자주민카드를 전제로 하는 고객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호텔들과 대형음식점들은 서로 연계하여 전자주민카드를 전제로 하는 공동고객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상용고객 우대 제도를 도입할 것이다. 경제적 효용이 높은 반면 이미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전자주민카드를 발급하였기 때문에 투자해야 할 비용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전자주민카드를 전제로 하는 고객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곳을 이용할 경우 당연히 고객관리 차원에서 이용기록이 남게 되고 이들 기록은 집적되고 가공, 분류되어 특정한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는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 근태관리 그리고 이 관리제도와 결합된 전자적 노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적의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최첨단 카드이다. 기업체는 몇개의 입출구와 중요한 부서에 카드판독기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의 각종 사원관리정보를 수록한 컴퓨터를 한 대 비치하고 이들을 서로 연결하기만 하면 효과적인 노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기업체의 노무관리체계가 정비되는 대신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체의 통제력이 강화되고, 그에 따라 노동강도도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노동조합을 관리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고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좀 더 집중적이고 강하게 적용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주민카드가 노무관리시스템의 전제가 될 수 있듯이 당연히 일정한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되는 모든 단체들의 소속원 관리시스템의 전제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학사관리행정의 기반시설로 기능하여 출석관리, 학교출입관리, 성적관리, 징계관리 등에

사용될 수 있고, 이러한 기록은 디지털정보의 특성상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될 것이다. 전자주민카드를 전제로 하는 학사관리시스템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일반화된다면 어떤 사람의 평생동안의 기록을 추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자주민카드에 의하여 나이확인을 자동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영화관람때나 비디오방출입 또는 비디오 대여시 각 장소에 카드판독기를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주민카드를 제시하고 카드판독기에 삽입하도록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용방법은 이미 한국전산원의 전자주민카드 분석자료에도 제시되고 있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제도는 정부의 지지를 받아 당연하게 도입되고 확대되어 갈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전자주민카드는 당연히 가까운 미래에 전자투표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전자투표 제도는 약간의 기능부가로 투표권자가 일일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투표하는 재택투표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진보적이고 편리한 제도만은 아니다. 전자투표는 항상 조직적인 대리투표를 매우 간단하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컴퓨터 프로그램의 조작으로 투표계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여 전자투표에 의한 영구집권까지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제도이다. 하지만, 전자주민카드가 도입되고 이 카드를 이용한 전자투표 그리고 재택투표의 편리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전자주민카드 제도를 도입한 우리 사회의 척박한 문화적 풍토와 효율성 중심에 사로잡힌 정부 주도의 정보화사회론에 휘말려 컴퓨터 조작가능성은 기우로 치부되고 결국은 도입될 가능성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제 마음만 잘 먹고 몇몇 사람만 확고한 지지자로 확보하면 간단한 조작으로 영구집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6. 마치며

여러 가지 주장을 해 보았으나, 요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도입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대표인 사이먼 데이비스 박사가 말했듯이, 정부가 주장하는 전자주민카드의 효용은 ‘환상적’이지만 그 위험은 ‘실질적’이다. 호튼 미하원의원은 ‘프라이버시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여기 저기 흩어져 있을 때뿐이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미 이 말이 무색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정보의 중앙집중이 이루어져 있고,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은 이렇게 집중되어 있거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개인정보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전산망 전체의 키워드로 기능할 것이다. 국민은 주권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대상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다. 항상 글을 마무리하는 예로 들고 있는 퓨처리스트지를 인용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세계미래협회가 발행하는 퓨처리스트지는 97년 1~2월호에서 미래사회에는 사람의 몸속에 초소형 컴퓨터칩을 삽입하여 신용카드는 물론 여권이

나 운전면허증 등의 기록을 담아 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만약 전자주민카드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된다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듯, 사람의 몸속에 컴퓨터칩을 담아 다니는 세계 최초의 나라는 우리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끔찍한 일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서는 아니될 것이다.

	인권 자료실
	등록번호
B4-1	62

- 1 -

‘인구’ 관리의 권력관계

정송일(정보통신연대INP 회원)

1. 우리는 왜 관리대상이 된 현재의 우리에게 무관심한가?

1). 주민등록의 위상: 근대의 권리관계에서 항상적인 투쟁의 쟁점으로서 인구

우리는 현재의 권리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현재의 권리관계는 통치기예로서의 인구(=주민 등록=통계학) 관리와 개인의 자기 정체성(=자기=주체) 사이의 쟁점을 두고 투쟁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개인으로 이루어진 인구 혹은 인구들의 요소들인 개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

자기 정체성 제시의 수단인가? (내부적 정체성=자기 인격으로서의 정체성)

통치기예의 수단인가? (외부적 정체성=부여받은 정체성의 문제점과 불가피성의 정도)

한 개인 혹은 인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정체성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한 개인 혹은 인구는 양자 사이의 결합에서 다양한 색깔 차가 존재한다.

2). 주민등록의 역사: 권리관계에서 인민(=주민) 관리의 역사와 투쟁

현재사 속에서 과거사는 압축되어 현재 속에 살아 있다. 근대 이전의 자기 정체성 확인(=구성) 방식에는 일단 세 가지 대표적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유목국가는 인구(=주민) 관리에서 주로 자기 내면의 정체성에 의존한다. 농경국가는 인구(=주민) 관리에서 주로 자기 외면적 정체성에 의존했다. 농경 사회는 유학으로 내면 관리를 보조했다. 인구의 관리 방식은 호적과 족보였다. 이들의 근대의 전환방식은 ‘족보(=호적)에서 국가관리로’의 형식이었다. 농경 사회의 외지 서구형은 기독교로 내면 관리를 보조했다. 인구의 관리방식은 교회의 출생, 결혼, 사망부 관리였다. 이들의 근대의 전환방식은 ‘교회관리에서 국가 관리로’의 형식이었다. 신라, 백제---고려---조선은 농경국 가였다. 반유목·반농경국가는 인구(=주민) 관리에서 내면의 정체성과 외면의 정체성의 결합에 의존했다. 이들의 권리관계는 유목형과 농경형 사이의 조합으로 구성되었다.

3). 근대 국가의 통치기예에서 ‘주민’ 관리의 통계학에서의 쟁점

근대 자본주의국가는 인구관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다. 외면의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국가로 전환되었다. 내면의 정체성 구성방식은 프리시아 형(=중앙집중형)과 아메리카 형(=다 중심의 분산형)의 구성 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 국가 시대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권리관계에서 프리시아 형보다 아메리카 형에 가깝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리관계는 항상 쟁점에 직면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두 가지 쟁점의 분할선에서 자신의 권리관계를 구성한다. 관리의 주체와 대상을 구성하는 두 방향이 존재한다.

국가 관리의 주체는 누구인가? 국민, 국가, 행정기관, ... 비밀기관

국가 관리의 대상은 누구인가? 인구, 정부, 행정기관, ... 비밀기관

두 분할선 각각에서 우측의 비밀기관(=CIA=안기부, 보안사, 비밀경찰, ...)은 비민주의 증표가 되고, 좌측의 국민(=인구)은 민주의 증표가 된다. 경향적으로 프리시아적 길은 우측을 향하고 아메리카적 길은 좌측을 향한다. 구소련이 민주적이었다고 믿는 미망도 웃기지만 미국을 민주주의 화신으로 보는 의식은 사탄(=마귀)적이다. 우우우 사탄아 물러가라. 중요한 것은 정도차이다. 민주와 반민주의 대립 구도는 이 ‘사소한’ 정도 차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정도차이는 사소한 차이가 아니라 결정적인 차이이고 사활의 쟁점이다.

2. 인민을 둘러싼 권리관계에서 쟁점: 근대의 시민혁명과 근대 국가

1) 민주주의 국가는 누가 주인인가? 두 가지 쟁점의 분할선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 여부는 헌법이 아니라 두 가지 분할선에서 실천의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권리관계에서 법은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고 중요한 것은 실제의 현실 운영실태이다. 두 가지 쟁점의 분할선이 있다.

지배층의 통제선: 국민은 관리의 대상인가? 국민은 보호의 대상인가? (미: 의료보험제도); 국민은 감시의 대상인가?(도둑과 경찰) 국민은 동원의 대상인가?(간첩과 군대)

인구측의 통제선: 국민은 어떻게 국가를 관리해야 하는가? 국민은 지배층을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가? 인권은 인민의 국가감시를 전제한다.

두 가지 분할선은 내부에서 사고를 혼란시키는 교란요인이 있다. 지배측의 통제선은 동일한 현상을 인식하기에 따라 보호와 감시 사이에 망서린다. 인구측의 통제선은 동일한 현상을 인식하기에 따라 민주시민과 불온분자(=간첩) 사이에서 망서린다.

2) 쟁점은 '인구' 기록의 내용과 관리방식 그리고 사용방식이다.

*인구 기록 내용의 쟁점: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기록 내용은 사활의 관건이다. 누가 관리하고 누구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기록 내용이 달라진다. 근대 국가 내에서 '인구' 관리방식의 차이가 현재의 권력관계(=계급투쟁)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민등록증 제도에서는 기록 내용의 차이가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이다.

**인구 기록의 관리방식의 쟁점: 개인의 정보에 대한 분산관리방식과 통합관리방식의 차이는 민주와 반민주 사이를 나누는 경계선이다. 오직 분산관리만이 인권에 적합하고 통합관리방식은 무시무시한 대형(=오웰의『1984년』에서 큰형님) 지배의 시대를 만든다. 통합관리 방식은 인간의 정체성(=주체화)을 자기 내면의 인격체로서 아니라 타자 주입의 국가하수인(=전체주의의 가미가제형=나찌의 아우슈비츠 실행자)으로 만든다. 분산정보와 통합 정보의 차이는 그것이나 그것이나 똑같고 효율성의 차이만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다. 자유롭게 숨쉴 공간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문제이다. 같은 감옥이라도 반평의 감옥과 1000평의 감옥 그리고 지구 및 우주라는 평의 감옥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통합 정보형의 사회는 통합의 정도의 강도에 따라 인간을 산채로 죽일 수 있는 살인체제로 연결된다.

***인구 기록의 사용방식의 쟁점: 인구의 기록은 목적이 개인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킨 것이다. 이 방식은 도둑이라는 쟁점과 간첩이라는 쟁점에 직면해서 교란된다. 도둑을 잡기 위해서의 명분과 간첩을 잡기 위해서는 명분을 활용해서 사용방식의 효율성을 취하려고 시도하면서 무시무시한 대형 지배의 합리화가 시도된다. 도둑과 간첩은 인구의 개개인을 혐혹시키는 지배층의 주술적 무기이다. 유명한 지적은 경찰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시대(미국에서 남한까지)가 권력관계의 구성요소로 도둑을 양성관리하는 사회라는 지적이다. 도둑과 간첩 잡자고 개인 정보의 사용방식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은 작은 도둑과 간첩 잡자고 큰 강도와 큰 간첩을 키우고 있는 꼴이다. 관건적인 문제의식은 개인정보의 무한허용사회는 차라리 도둑과 간첩과 함께 사는 사회보다 훨씬 못한 사회라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무한허용은 끔찍한 사회이고 도둑과 간첩은 사소한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근대 시민 혁명의 결여가 가져 온 지속적 효과: 서구와 남한의 비교.

현재는 현재사로서 유지된다. 현재사는 역사적 재생산의 산물이다. 우리는 인권의식이 전반적으로 결여되어, 투쟁 사안이 따라 일시적인 인권의식이 발생하는 정도이다. 인권은 헌법상의 문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적인 역사적 투쟁의 재생산 속에서만 존재한다. 서구는 현재의 인권상황 속에서 항상적으로 시민 혁명을 재생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권이 시혜처럼 헌법 속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보수적인 헌법에도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주민' 기록 내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결여있다. 우리는 '주민' 기록의 분산과 통합형의 차이에 대해 무감각하다. 우리는 '주민' 기록의 사용방식에서 간첩과 도둑의 신을 내세워 무한 허용을 추구하는 나찌 게슈타포형과 정당한 정체성(신분) 확인이라는 방식의 차이에 무감각하다.

우리는 '인구' 관리의 쟁점이 현재의 사회적 관계(=푸코의 권력관계)에서도 항상적인 쟁점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근대민주국가의 이념과 인권의식이 부재하고 있어서 도처에 사고상의 공백을 가지고 있다. 항상 현재사가 문제이다. 기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나간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사 속에 살아 있는 과거 기원의 현재사가 문제이다. 이제 조상탓도 부모탓도 쟁점이 아니고 현재를 재생산하는 바로 내탓이 문제의 핵심이다. 우리 남한은 돈이 없어서 선진국에 미달하기 이전에 정치적 의식이 결여되어 선진국에 미달하는 것이다.

3. 현재의 주민관리의 전사

우리는 이제 국적과 혈통적(=호적) 그리고 거주적을 구분해야 한다. 이것들은 하나의 목적이 아

니라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전혀 다른 제도들이다. 우리는 이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금찍한 사회의 한 사례의 현재사를 보게된다. 이런 사회에 이르게 된 사항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라는 나무패 제도(조선 호패 제도의 기원=병역법과 국적에 해당)와 촌장의 민적 관리 제도(=주민법의 해당) 그리고 가족제도(호적과 족보의 기원)가 있었다. 신라의 가족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는 생략한다.

현재의 소위 "주민등록증 제도"라는 통합과물 이전의 주민 관리 방식 현재도의 뿌리로서 조선 시대는 중요하다. 조선은 사농공상의 신분제도와 거주지 주민 관리 방식 그리고 족보제도가 있다. 조선은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 국가이다. 고려의 대장경에 비견되는 방대한 왕조실록들, 족보들을 보라. 조선은 국가제도로서 양반제도와 중인제도, 상민제도, 노비제도가 있었다.

조선 시대에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자는 특권층 양반 뿐이다. 나머지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고 말 것이 없었다. 간단히 말해서 모두 아는 것이다. 양반은 이사를 가서도 자신이 양반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여기서 양반제도의 입증이 큰 문제가 된다.

(양반제도에서 신분증의 사례를 보자. 기록 사항은 호주와 거주지 주소; 혈연사항(호주, 부, 조, 증조, 모, 외조, 외증조의 사회적 신분); 사노비, 발행관청, 공문서 작성자의 수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 중기 이후에서 조선 말기까지의 실제 사례이다. 고위층의 경우라면 아마 사정이 다를 수도 있을 지 모르겠다. 조선 중기 이후는 특히 임진란 이후는 특별하다.

조선의 노비제도의 사례를 보자. 왕조실록에는 임진왜란 때에 왜군의 입성 이전에 이미 한양에서 노비문서를 태운 노비의 난리가 나온다. 왜군이 입성하기도 한성 노비들은 노비문서를 태우기 위한 난리를 벌렸다. 이후에 조선의 노비제도는 사실상 붕괴의 길을 걷는다. 노비제도는 노비 문서 제도를 구성요소로 유지된 것이다.

조선은 임진왜란 동안에 신분 확인의 공문서가 상당히 타버렸다. 임란왜란 이후 조선은 신분제도를 다시 재생산하기 위해서 국가 공문서를 재구축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양반사회의 족보라는 사적 자료로 보완자료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다음 사항을 다시 쳐다 보자.

족보 위조라는 신화와 실상 그리고 연구 결과(폐쇄적인 과거제도 합격자)

호적의 지방관 관리와 족보의 씨족관리 사이에 상보성(허균의 양반전)

임진란 이후에 족보 간행이 성행한 이유는 호적의 일부가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조선식민통치를 하기 위해서 조선의 호적관리를 일본식으로 개신하였다. 일제 시대에 전 인구에 호적관리를 의무화하였다. 이 때 이제까지 성씨가 없던 사람들에게 성씨가 부여되었다. 이 때 이제까지 이름이 없던 여자들에게 이름이 부여되었다. 여기서는 저항이 거의 없었다. 이미 상황은 달라졌고 일반 평민들은 이 분야에서 약간의 이익도 있었기 때문이다. 양반들은 토지 조사에서 평민들의 토지의식(=왕의 땅)과 일제 토지 조사 사이의 괴리를 이용해서 신고 하나로 토지를 약탈할 수 있는 이익이 있었기에 역시 만족했다. 일제 시대에 창씨개명을 해서 조선의 성씨를 일본의 성씨식으로 바꾸자 상당한 저항이 일어났다. 우리의 성씨제도는 삼국시대의 성씨가 아니다. 우리의 성씨제도는 고려 초에 등장한다. 우리의 성씨제도는 조선시대에 현재의 형태로 정착한다. 이것을 일제시대에 일본식으로 바꾼 것이다. 이것은 다시 일제시대가 끝난 후에 원상회복된다.

이승만 시대의 주민등록 관리 방식은 일제 시대의 것을 물려 받았다. 자신의 호적이나 토지 원부를 추적해 보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25 내란 중에 타지 않았다면 그렇다.

현재(사) 속의 우리의 정신상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정신에의 노예상태이다. 아직도 양반을 찾는 사회 기반의 한 풍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아직도 푸주간은 안된다는 방식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조선의 신분제도에서 양반의 후예는 부끄러워 해야 하는가? 자부심의 근거인가? 족보는 어디쯤에 존재하는가?

임진란 이후에 양반의 후예들은 자신의 신분입증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몰락 양반은 대부분 문자를 제대로 깨우치지 못했다. 몰락 양반은 자신들이 도망노비출신이 아니라는 신분상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었다. 몰락양반들은 자신들의 호적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사 후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본적지에 가서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했다. 당시 호적은 특권을 의미하는 수단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 호적의 결실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족보발간에 치중했다. 당시 족보는 특권층의 일족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자료였다. 몰락 양반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사에 치중했고, 문자는 제사에서 한문으로 지방을 쓸 수 있는 정도로 만족하였다. 이런 정신상태의 영향이 말의 습관에 남아 있다. “이 양반, 저 양반”, “쌍 것들”이라는 비칭, ...

우리는 혈통 중심의 호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특권층의 향유물이었다. 이런 정신상태에서 국가 관리의 호적 제도가 등장하자 저항없이 수용하게 되었다. 호적은 특권층의 것이었는데 이제 일반인도 이 특권을 향유(?)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현재사 속의 과거의식은 현재의 우리는 죽이는 독소이다.

4. '인구'관리의 권력(투쟁)관계에서 박정희 시대의 역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재생산과정 앞에 섰다. 우리는 국적법, 호적법, 주민법 사이의 원 개념상의 차이에 주목하고 보아야 한다. 현재의 고물 상태의 주민등록 상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 사소한 차이 때문에 우리는 분하게도 민주주의 사회의 민주시민이 못되어 국제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과거사를 재생산해 보겠다. 기록의 활용목표(국적법, 호적법, 주민법의 차이), 인구(=주민)에 대한 기록 내용이 목표에 걸맞는 내용인지의 확인 문제, 기록의 제시된 활용목표 자체가 정당한지 여부의 확인과 실제의 활용방식의 정당성 여부의 확인 문제, 원래의 목표에 걸맞는 의무 및 강제성인지의 여부의 확인문제 등이 중요하다.

1950. 시, 도민증 제도---50. 6. 25. 내전 중에 신분확인 수단이 절실했다. 이 상황은 소설『태백산맥』에서 짐작할 수 있다.

도민증은 전시 통행증이다. 사진 추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 당시에 수용된 이유는 한국사에서 6.25. 대리전쟁형 내란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전시통행증(=도민증)은 전시가 아니라면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1962. 1. 15. (기류법 제정)--- 박정희 쿠데타 정권의 국가재건 최고 회의가 1가구별 1용지의 기류부에 본적지 이외의 일정한 장소에 30일 이상 주소 혹은 거소를 정한 자에게 신고의무를 제정한다.

기류법은 원래 주민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도민증과 결하고 있다. 전시도 아닌데 여전히 주민의 거주지가 문제시되고 있다. 이 법은 헌법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한 것이다. 이법은 국가(=박정희 군사정권)가 국민 관리를 위해 제정한 법이다. 국민 생활의 편의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법은 사실상 주민법과 호적법을 결합하고 있다.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

정보의 통합관리(=주민법과 호적법의 통합)는 큰형님의 사회의 진행이다. 게다가 남한은 이미 국적법과 호적법이 통합된 끔찍한 사회였다. 이것은 조선 시대의 유습의 영향이다. 남한은 아지근대에 도달하지 못한 조선 시대식의 국적법을 가지고 있다.

1962. 5. 10. (주민등록법 제정)---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제1조),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을
시·읍·면에 등록하도록 하고,
세대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동할 때에도 퇴거와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2조, 제6호 제10조)

국적법, 주민법 그리고 호적법이 통합되고 있다. 국가신분증 제도이다. 완전히 괴물 상태이다. 이것이 왜 괴물인가? 이런 정보정보의 사례가 없다는 사실에서 왜 괴물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각국의 사례 비교를 해보면 이처럼 강력한 통합은 존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전쟁 경험은 신분확인에 있어서 관리상의 효율성만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6.25. 내란으로 당시 대부분의 국가 호적이 유실되고 당시의 호적은 그 이후에 새로 만든 것이다. 전쟁 중이라 누구도 제도 시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 이 새 호적으로 신분확인을 하기가 어려웠다. 특히 전후에 경찰과 군대는 자본주의 측과 공산주의 측 가담자의 구별상에서 신분확인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호적이 유실되어 그 확인작업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경험이 군사정부가 새로운 호적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통합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1968. 5. 29. 1차 개정(주민등록증 제도 추가)--- 호적제도와 당시 도민증, 시민증 제도의 결합
18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강제 규정 아님)

1968. 11. 개인고유번호 12자리: 앞의 6자리 숫자(거주지역), 뒤의 6자리 숫자(거주세대와 개인 번호)

이제 국적법, 호적법, 주민법, 계다가 전시 통행증 제도까지 통합되었다. 이것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인고유번호로 관리되는 것이다. 광기의 발작증세는 현실화되었다. 민법상의 신분 확인은 기껏해야 상속 때나 필요하다. 국가는 항상 국민들에게 상속시켜 나누어 줄 것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통합정보를 관리하는가? 통합정보는 무서운 첫걸음을 걸은 것이다. 무시무시한 큰 형님의 독재는 바로 눈앞으로 다가 왔다. 개인별 고유번호는 왜 필요한가? 그것이 통합 상태라는 문제이다. 국민복지를 위해서 연금이라도 주려는 것인가?

1970. 1. 1. 2차 개정(주민등록증 관한 사항 추가)---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주에게 18세 이상의 모든 주민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사법 경찰 관리에게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역시 발급받지 않는 경우 처벌 규정 없다.

50년대의 6.25 내전은 말로는 '휴전상태'이고 실제로는 종전상태였지만 관념상에서는 전쟁은 훨씬 강화되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 전통적인 수법, 간첩의 명분이 등장했다. 이 간첩의 명분은 멀쩡한 인간을 주술로 사로잡아 미치게 만든 마법이 있다. 만일 아직도 자신이 간첩의 주술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세상에 간첩없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라. 남한에 온 간첩 '리철진'은 아직도 미소를 띠고 있다. 유사이래 이 세상 천지에 간첩 없는 나라는 없었지만 우리처럼 통제가 심한 사회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라. 간첩잡자고 주민잡는 법이 여기 탄생해 있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간첩 주술의 마력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975. 7. 25. 3차 개정(주민등록증 제도 강화)--- 과태료와 벌칙 규정을 강화.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거주 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기타 국가의 인력 차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개정 이후)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연령을 17세로 낮추면서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사법 경찰 관리가 간첩의 색출, 범인의 체포 등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퍼런 유신독재의 시대이다. 간첩에 이어 민방위대가 쟁점에 추가되고 있다. 민방위대는 문제는 전시 동원의 문제이다. 전쟁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전시 동원체제가 강화된 것이다.

1975. 8. 26. 시행령

1975. 11. 4. 시행규칙 개칙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조의 2, 시행규칙 제1조): 생년월일, 성별, 지역의 13 자리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정보의 량이 늘어난 것이다. 정보의 량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너는 왜 나를 관리하려고 하느냐? 너 독재정권의 문제점은 바로 그것이다. 니가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관리의 효율성은 누구를 위한 관리의 효율성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가?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정부라는 주인의 관리 대상 물품에 불과하다.

1977. 12. 31. 4차 개정(법률 제3041)--- 세대별 주민등록표 외에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번호순으로 편재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증의 발급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형벌 규정 신설).

이제 발작은 본말전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개인별 등록표는 전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큰 형님을 위한 정보이다. 이런 정보가 도대체 어디에 필요하단 말인가? 국적법에 필요한가, 호적법에 필요한가, 주민법에 필요한가, 심지어 통행증에 필요한가? 전혀 불필요한 정보를 너는 왜 요구하느냐? 머슴이 주인행세를 하더니 마침내 주인에게 벌까지 주고 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속한다.

1980. 12. 31. 5차 개정(법률 제 3330호)----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 소지 의무를 부과하고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통합정보의 괴물이 손아귀에서 7일간도 벗어나서는 안된다. 통합정보의 악귀의 꿈은 바로 7일간의 유예뿐이다. 괴물의 한계는 7일이다. 이 괴물은 단지 7일간만을 참아 줄 수 있다.

1983. 일제 개신

지문 날인 포함

실제의 정보 기록 사항: 140 개 항목

실제의 정보 활용 사항

1) 사용 목적상의 차이과 현재 상태

국적은 국가라는 집단의 구성원을 확정하고 공증하는 제도이다. 양자는 목적이 상이하다.

국가의 인적 관리체계는 국적관리방식에 있다. 우리나라 국적 취득은 속인주의이다. 출생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를 기본적인 국적 취득 요건으로 규정한다. 개정전 국적법의 현재의 국적 법은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자가 국적을 취득한다.

국적 취득자는 호적법에 의해 신고해야 한다. 호적은 원래 민법상 신분등록 등록관계를 공증하는 것으로 가를 중심으로 편재되는 우리 호적법상 친족 집단의 구성원과 그 신분 관계의 확인제도이다.

2) 호적은 시읍면의 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감독은 소재지 가정법원장이 시행한다. 호적법은 신고의무자를 정해주고 무적자에 대해서는 취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아자에 대해서도 기아

발견조서에 의하여 직권 호적 편제를 할 수 있다. (호적법 20조, 49조, 57조, 116조)

2-1) 호적에는 본적, 전호주, 호주, 가족의 이름, 본, 성별, 출생일, 주민등록번호, 가족이 된 원인, 가족사이의 관계를 계통적으로 기재한다. (호적법 제 15조) 호적부는 가장 기초적인 신원확인공부이다. 호적부에 기재하는 순서는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호주의 방계친족과 그 배우자 등의 순서로 기재한다. 제적부의 보존연한이 80년이다. 호적 제도의 특징은 가별 편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 제도는 가족의 범위보다 넓은 가(민법의 친족의 구체적 표현) 중심이다. 이것은 현실적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혈통체계로 편재되어 있다.

3) 우리나라 주민등록 제도는 전 국민에게 강조되는 거주지 등록제도, 전국민에게 고유하고 불변하는 번호를 부여하는 고유 번호 제도, 모든 성인에게 강제 발급하는 국가 신분증 제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주소를 가진 자와 주소를 이전한 자는 누구나 시장, 군주, 구청장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본적, 주소, 전입 전의 주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위반하면 2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5) 기록 정보의 목적과 양에서의 문제점

세대별 주민등록 표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사항외에 호주, 개인별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이동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 서식)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위 신고 사항 외에 기재 사항은 세대 번호, 혼인 여부, 혈액형, 본적 변경 사유, 개인별 주소 이동 상황, 예비군 교육 훈련사항(편성 부대, 편성 구분, 교육 훈련 보류 사유), 동원훈련사항(소집부대, 집결장소, 동원보류 또는 면제 사유, 훈련일수, 기능보유여부, 동원 순위 및 사유 등), 자격 면허 사항과 관련하여 직업 훈련의 직종과 훈련 실시 기관, 졸업 연도와 학과, 학령 아동 관련 사항(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취학연도, 졸업 연도), 원호 대상자 관련 사항(보훈 보호, 생활 등급, 대상 구분), 민방위 관련 사항(소속 민방위대, 교육 시간, 참석 시간, 불참 시간 등의 목록) 생활 보호 대상자사항(등록 번호, 건강상태, 의료보호 대상, 재산상황, 가동 능력자의 수 등), 주민등록증 발급 사항과 관련하여 재발급한 날, 학력, 직업 등을 기재한다 (시행령 제 2-1호 서식) 수집 정보 항목은 총 140개 항목이다.

6) 발급 방식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를 받은 자는 발급 기간 내에 직접 발급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가서 사진 3매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소명한 후 그 공무원 앞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용지에 지문을 찍어야 한다 (시행령 제 33조 제 2항).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에는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염지 손가락의 경우에는 회전 지문과 함께, 평면 지문도 날인한다 (시행령 제 33조 별지 제33호 서식).

현재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은 앞 면의 사진, 이름, 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포함), 본적, 주소, 호주이름, 발행일, 병역 사항, 발급기관장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주소 변경 사항을 기재하는 곳, 염지 손가락의 지문, 특기 번호(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임) 와 함께 “이 증은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습득하신 분은 우체함에 넣어 주십시오” 문구 기재.

5. 국가의 전자주민 카드 제도 도입 의지와 시민들의 저항

1995. 4. 발표

1997.12.에 1998.12. 전자주민카드 도입 의결.

한 차례의 싸움으로 중단되었다. 시민단체들의 승리다.

6. 현재의 주민등록 일제 갱신

주민등록 일제 갱신은 시작되었다. 이미 시작되었다.

1999.210 ~ 2000. 5. 31.

개정 주민 등록법 (부칙)

제 1조(시행일)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

제2조(주민등록증 발급 시기에 관한 특례)

1. 주민등록증은 20000년 3월 31일까지 발급 완료.

2. 20000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도 발급 사용할 수 있음.

3. 종전의 규정에 의해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20000년 6월 1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음.

1) 종전의 내용의 유지

통합정보의 괴물(국적, 호적, 주민적, 전시통행증, 전시동원증, 전시병과구분증, 범죄자의 감시 확인증)은 유지된다. 게다가 추가 정보가 많다.

지문 날인의 문제점

* 명분은 오직 간첩과 도둑을 잡자는 것 뿐이다. 아마 우리만 간첩과 도둑이 있는 것으로 아는 가보다. 우리의 간첩과 도둑은 신출귀몰하다. 어디에나 도처에 존재한다. 그것도 모르면 너는 불순분자가 된다. 순수분자만 사는 세상은 무사운 세상이다. 바로 너는 언제라도 불순물이 될 수 있다.

* 지문 날인은 치욕이기도 하다. 당신은 잠재적 범죄자이다. 일본서도 이것은 외국인(=재일동포)에게만 요구되다가 이제 폐지되었다.

2) 달라지는 내용

2-1) 호주제의 폐지(?)

2-2) 컴퓨터 화상 자료의 입력

화상자료 입력

입력 일자, 사진 입력 방법(사진1, 카메라 촬영2), 인감 입력방법 (대장 인감 인력1, 인감 지침2, 인감 미등록3) 표기

화상 자료 입력 방법

사진입력, 지문입력

17세 이상 신규자

주민등록증 이면(주소이동사항만 기재) 새등록증을 교부받은 주민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 변경 스티커에 내용을 기재한 후 주민등록증 이면에 부착.

주소 및 읍면 동명은 고무인을 제작하여 사용하고, 스티커는 깨끗하게 부착.

스티커는 반드시 조폐공사가 제작한 것만 사용.

2-3) 약간의 빗나간 편의: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 서류를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아무때나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97년 3월 26일 한겨레). //대학서도 각종 증명서류 발급 가능 대상 민원은 호적 등 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건축물 관리대장 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가격 확인원, 농지원부 등본,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 공장등록 증명 등이다. (97년 3월 27일 한겨레 대전) // 농협에서도 민원서류 발급(경기도 위와 동일)

2-4) 사용과정상의 의외의 악용 사례.

국감 김충조 의원 경찰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아 (97년 10월 15일자 한겨레)

기록 내용들

자료입력 항목 기본 사항 (23)----- 1 주민등록 번호, 2 성명, 3 혈액형, 4 혼인관계, 5 직업, 6 주민등록 상태, 7 본적, 8 본적 호주 변경 사유 9 호주 성명 10 호주 주민등록 번호 11 호주와의

관계 12 주소 13 특수 주소 14 전입 일자 15 주소 변경 사유 및 일자 16 행정 동명 17 세대주와의 관계 18 세대주 성명 19 세대주 주민등록 번호 20 전화번호 21 주민등록증 발급일 22 증 발급사유 23 학력

병역사항(16) -----1 병역상태 - 복무 구분 2 처분 일자 3 신체등유 4 처분사항 5 군별 6 계급 7 군번 8 병과 9 주특기 10 입영 일자 11 전역 일자 12 전역 사유 13 전역 근거 14 역종 15 취역 연월일 16 역종 변경 사유

예비군 (5) -----1 편성구분 2 소속 3 편성일자 4 편성비대상 및 보류 사유 5. 병역 동원후위 조정 - 부적격자 사유

민방위 (8) -----1 편성 일자 2 편성 구분 3 편성 면제 --유예 사유 4 소속 5 소속 변동일자 6 직책 7 교육 시간 8 참석시간

인력 동원 (12) -----1 동원구분 2 직종기호 3 보류 및 면제 사유 4 동원원후 순위 사유 5 과학기술자 및 중점 관리지정여부 6 동원업체명 7 동원훈련연도 8 훈련일수 9 훈련실시기관 10 전시영장발부일자 11 신고사항 12 동원해제일자

자격 면허(4)----- 1 자격면허종류 2 등록(발급)번호 13 발급기관 4 특기구분

생활 보호(4)----- 1 대상자구분 2 건강상태 3 월평균소득액 4 적용년수

의료 보장(2)----- 1 의료보장구분 2 진료증(보험증)번호

보훈(2) ----- 1 국가유공자구분 2 보훈번호

학력아동 (1)-----1 유예면제사유

기타(1) ----- 주민등록표보관지

결과 : 국적, 호적, 주민적, 전시통행증(대 간첩 방지용), 전시동원, 평시 범죄감시증(도둑방지용)을 총 통하는 종합 정보.

실제로는 재산상태, 연금, 의료보험, 세금 등의 추적에도 이용가능, 일상생활에서 여행지 등도 여관의 통제로 이론상으로는 가능.

앞으로는 전자화상입력으로 고속도로의 통행에서도 지문감식이 감식이 가능할 것이다. 외진 도로변에서 주민등록증 번호보고 확인하는 현재 정도는 이미 빗어나고 있다.

총 점검

사소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다. 동일한 내용이라도 컴퓨터 자료화하면 발생하는 사항이 있다. 이제 일상적으로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곧바로 감시할 수 있다. 큰 형님의 꿈은 이제 실현되고 있다. 이제 어디서나 검문은 가능하다. 길가 외진 곳에서 당신은 자동차에서 손의 지문을 대면 전자장비로 당신의 신원은 확인된다. 왜 내 신원은 그렇게도 자주 확인되어야 하는가?

내가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이 관리대상으로 부여하는 나이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가 인지하는 나이다. 나는 내가 국가에 의해 매일 감시되지 않아도 윤리 도덕을 가진 나로 항상적으로 유지된다. 국가가 매일 수고하지 않아도 내 정체성은 내가 챙긴다. 우리는 국가의 감시망이 없으면 하루 아침에 간첩(=불순분자)과 도둑으로 변신되는 괴물이 아니다. 우리는 평소에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도 갑자기 도둑이나 야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다. 간첩이나 도둑 하나 잡자고 이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면 차라지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킬 가치가 있어야 한다.

나는 내가 사는 나라가 자랑스러운 민주국가이기를 원한다. 인권 후진국이란 딱지를 용인하는 것은 내가 범한 인류 모독죄이다. 이것이 부끄럽다. 인류는 한 형제라고 한다. 하물면 독재자나 비밀기관이라고 다른 것인가? 냉정한 눈으로 현재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걷고 있는가?

새 주민증에서 지문날인의 문제

오 두희

개악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교체사업은 몇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바뀌으며, 둘째 호적, 병역사항을 제외하였고, 세째 사진, 지문을 디지털입력기로 화상처리 전산으로 입력되어지며, 중앙에서 통합 관리 된다는 것이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정부의 주장대로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고, 아름답고 품위있는 카드로 교체되기 때문에 좋아졌다 고 생각 할 지 모른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세련된 방식으로 국민을 통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개악되었다.

한국 주민등록제도의 역사를 보면 국민의 생활편익과는 거리가 먼, 냉전시대 국가안보의 산물로 시작되었다. 이후 독재정권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 점점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그래서 현행 주민등록제도는 많은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강제지문채취제도의 반인권성

1) 감시, 통제수단으로서의 지문날인

누구나 알다시피 지문은 1인 1형태로 되어 있어 신분확인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사용되어 진다. 그런데 한국 국민은 17세만 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채취당해야 한다.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은 범죄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러나 국민을 현실적인 범죄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당한다. 이는 국가권력이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가 재일 외국인을 상대로 지문을 강제적으로 채취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비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국가는 현대의 문명사회에서 그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강제지문제도는 국가권력이 국민을 단순한 관리, 통제의 객체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을 위해 효과적으로 지문을 찍어두는 것이 뭐 그리 나쁜가 라고 말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주민등록제도에 익숙해져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점 복잡하고 개별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신분증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효율성과 편리함만을 들어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고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문 날인된 것은 정보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는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일반화시켜 국가권력이 모든 사람을 감시, 통제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일본의 외국인지문날인제도에 반대했던 한 캐나다인은 지문날인제도가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취급방식이나 남아공의 인종격리정책에 필적하는 것이라고 공격한 바 있다. 이는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대한 존중이 아닌 통치의 편리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경종이다.

그런데 한국정부도 과거 일본정부가 쟁일동포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고집할 때 그 반인권성을 비판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인권침해 시비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의견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문강제채취 만이 아니라 디지털 지문인식기를 동원해 전자화된 형태의 지문을 채취하여 관리하겠다고 한다. 산넘어 산이다.

2)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로서의 지문날인

또한 강제지문날인제도는 기본적인 인권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란 '누구나 자기만의 비밀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원치 않는 자기자신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이다. 또한 개인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국가를 포함한 제3자에게 알릴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으로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OECD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1)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2)수집한 정보는 수집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3)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정보주체는 정보 공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5)개인정보 파일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은 강제등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면 법에 의해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헌법과 각종 국제인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3) 전산화 통합화 되는 지문날인

국가기관에 수록된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행정전산망은 1달에 500여건 이상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가 있기도 하는 등 결코 안전된 전산망이라 할 수 없다. 지금도 자주 발생하는 잘못된 기록에 의한 피해도 전산망이 복잡해지면서 시정되는 것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또한 컴퓨터로 처리한 결과는 무조건 맞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정부의 어떤 행위가 컴퓨터로 처리된 것일 경우, 그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국민의 책임이 되어 버린다. 그로 인한 개인 피해나 불행은 회복될 수 없다.

현재의 신분증명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신분증에는 사진, 이름, 주소만을 기재하고 신분확인에 관계없는 주민등록번호, 지문등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통합법률이 제정되어야 하고, 국제기준에 맞추어 적절한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주민전산화와 인포메이션 파시즘

정보통신연대 INP 한하늘
(hanul@kor.inp.or.kr)

정보사회에서 관리대상으로서의 개인

우리는 수없이 많은 번호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부터 도서관 출입회원번호, 비디오대여점 회원번호, 학번, 통장번호, 의료보험번호, 국민연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터넷 사용자번호, 피씨통신 번호등등....

그만큼 우리는 무수히 많은 기관과 업체, 단체들로부터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대부분의 번호들은 이유 있는 번호이며, 그 번호에 팔려 관리되는 정보들도 우리에게 번호를 부여한 관계기관 혹은 단체에게 꼭 필요한 정보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그와 함께 관리되는 정보의 양이 과다하게 많고 번호를 부여받은 개인 스스로도 어떤 정보들이 입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지 못하다. 혹시라도 어떤 기관이나 권력이 이렇게 수집, 관리되는 개인의 정보를 임의로 관리하고, 그렇게 입수한 정보들을 영뚱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차적으로 우리는 매우 불쾌해질 것이며 다음으로 유출된 정보의 영뚱한 사용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다거나 유출된 정보로 인해 겪게되는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개인 정보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국가권력에 의해 우리자신이 통제되고 관리됨으로써 야기되는 권리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민주주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정보독점은 정보사회의 조직되고 새로운 폭력과 범죄의 유형

정보는 정보 발생으로부터 소통되어지는 과정에 소유권과 접근권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대두된다. 어떠한 정보든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정보와 아무에게나 소통되어서는 안될 정보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며 축적되는 정보의 내용과 한계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은 당연히 관리를 통한 소통이 이뤄지며 구축을 추진한 주체에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이 부여된다. 이러한 권한은 권한을 가진 주체의 도덕성에 맡겨야 할 정도로 법의 강제를 받기도 힘들며 국가권력 그 자체의 기반이 되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협하게 되며 새로운 폭력과 범죄의 유형(인포메이션파시즘)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개개인 인간을 상대로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결국 이 주체가 국가 권력의 일방적인 추진과정을 통해 관철되는 것을 저지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국민의 정부라 일컫어지는 정권이 불행하게도 이러한 새로운 폭력과 범죄의 유형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에 우려를 금 할 길이 없다. 국가권력이 사람들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의 과다한 정보축적과 통합의 움직임은 미래 정보사회에서 인간의 의미는 전자기록에 의해 자신의 실체를 인정받게 되고 결국 인간의 본연의 정체성 문제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현재의 주민전산화과정은 유통회사에서 상품을 관리하듯이 인간을 물건 또는 상품이외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포메이션 파시즘으로 가는 걸음마 단계라고 본다. 전자주민카드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무산되자 국가권력은 이제 주민등록증의 갱신을 이유로 개인의 사진과 지문의 전산입력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개개인 지문이 주민카드에 입력되는 것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불쾌함정도가 느껴지겠지만 국가권력으로서는 민주주의의 지배를 받는 국가권력이 아닌 소수의 한 이익을 대변하는 지배권력으로 강화되는 것을 의미 한다.

정보사회는 어떻게 다가오는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축적과 독점화를 통한 초국적 자본주의로의 세계적 재편을 통해 급성장 하였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국가권력은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와 정보산업자본주의의 위상을 달리한다. 일련의 주민전산화의 추진은 이런 국가적 지배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의 사회는 궁정할수 없는 불행한 사회가 될것이다.